

2020년 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6. 24.(수)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이유미,
정부희, 최종희, 신정일, 이정모,
이승우, 정명섭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	(공개)
2	「제주 용천동굴」 내외 가로등 설치	(공개)
3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내 도로 확장 공사	(공개)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5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6건)	(공개)
6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7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검토사항】

8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공개)
9	「성락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공개)
10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재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1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지정구역 면적 정정 보고	(공개)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9건)	(공개)

【심의사항】

안전번호 천기 2020-05-01

1.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근린생활 시설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번지 등 7필지

○ 지정일 : 2004.04.09.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근린생활 시설 개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72번지

○ 사업내용 : 근린생활 시설 개축

구분		기존 건축물			개축 건축물	비고
		A동	B동	합계		
건축면적		136.06㎡	126.38㎡	262.44㎡	261.86㎡	△0.58
층별 면적	1층	130.08㎡	126.38㎡	256.46㎡	236.85㎡	△19.61㎡
	2층	75.24㎡	—	75.24㎡	85.49㎡	10.25㎡
건축물 높이		8m	—	8m	7.95m	△0.05m

※ 건축법상 개축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이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4개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5m(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으로부터 약7.5m 이격된 1구역에 근린 생활시설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검토 의견(2020. 6. 12.)

<*** 문화재위원>

- 이 지역은 홍조단괴 해빈의 배후 지역으로, 이 지역 해안 지형의 변형과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건물 등 구조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온 지역임
- 신청 건물은 기존 건물의 대지 위에, 기존 건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고 등의 규모 내에서 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내에서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건물 외관 등 경관적인 측면과 원지형 변화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축 기초 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홍조단괴 퇴적물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제주세계유산본부 지질전문가의 입회)하여, 세계유산본부 또는 천연기념물 센터 등 관련 기관에 보관 후, 교육과 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

(2) 지자체(*****) 의견(2020.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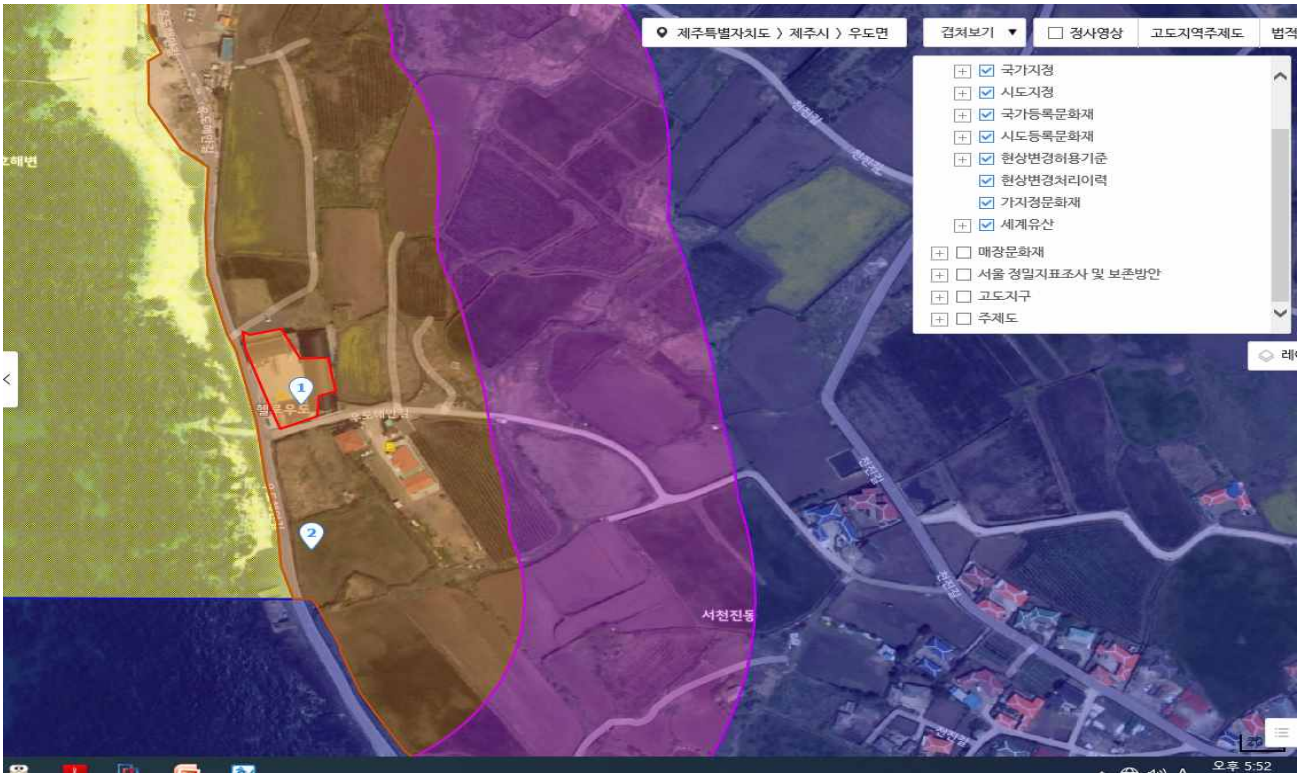
- 사업구간은 우도홍조단괴해빈 1구역 개별심의 구역으로 기존 2동의 건축물이 있으나 모두 철거한 후 1동의 새로운 근린생활시설 2층 규모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인근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따른 설치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도출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기초 터파기공사 시 지질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고 도출된 홍조단괴는 세계유산본부와 협의하여 회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9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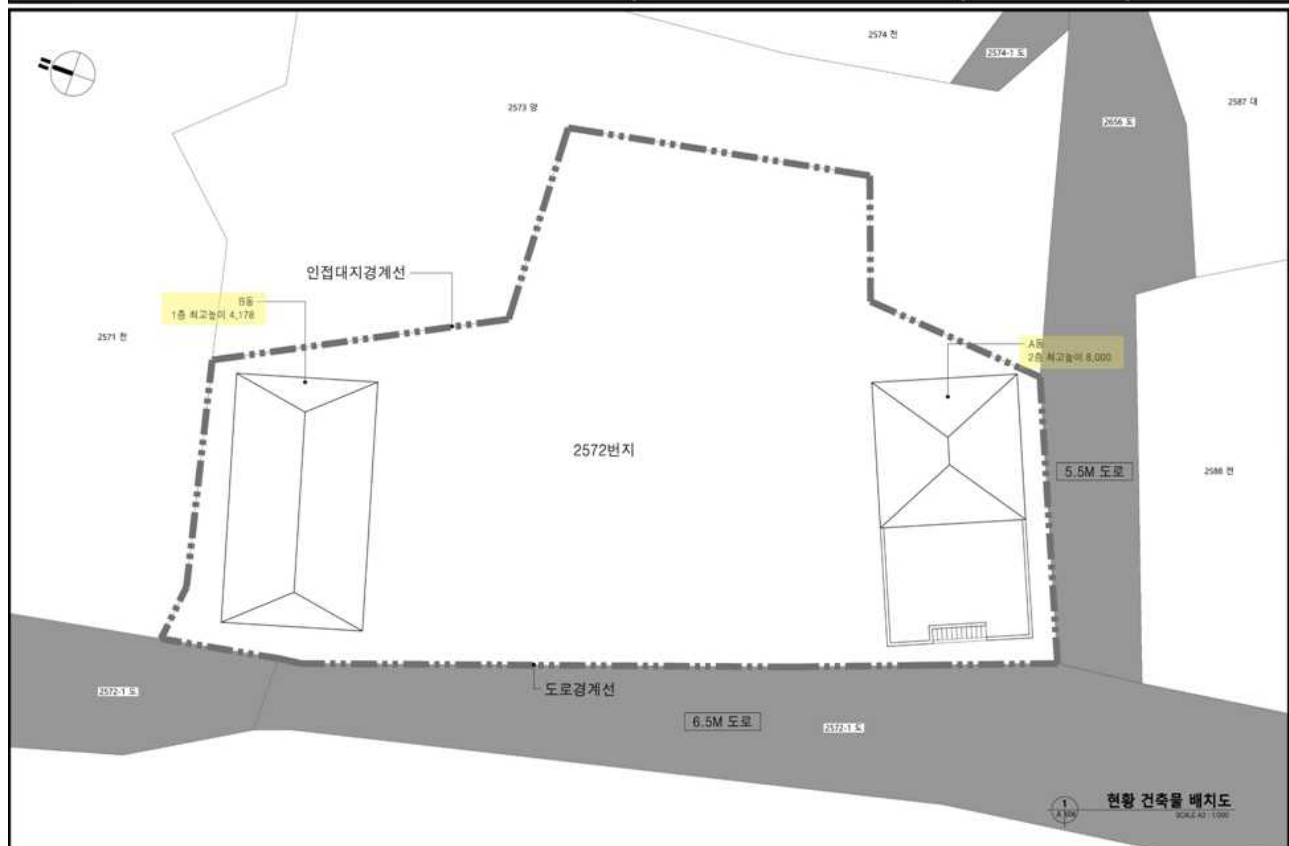
□ 지정구역 및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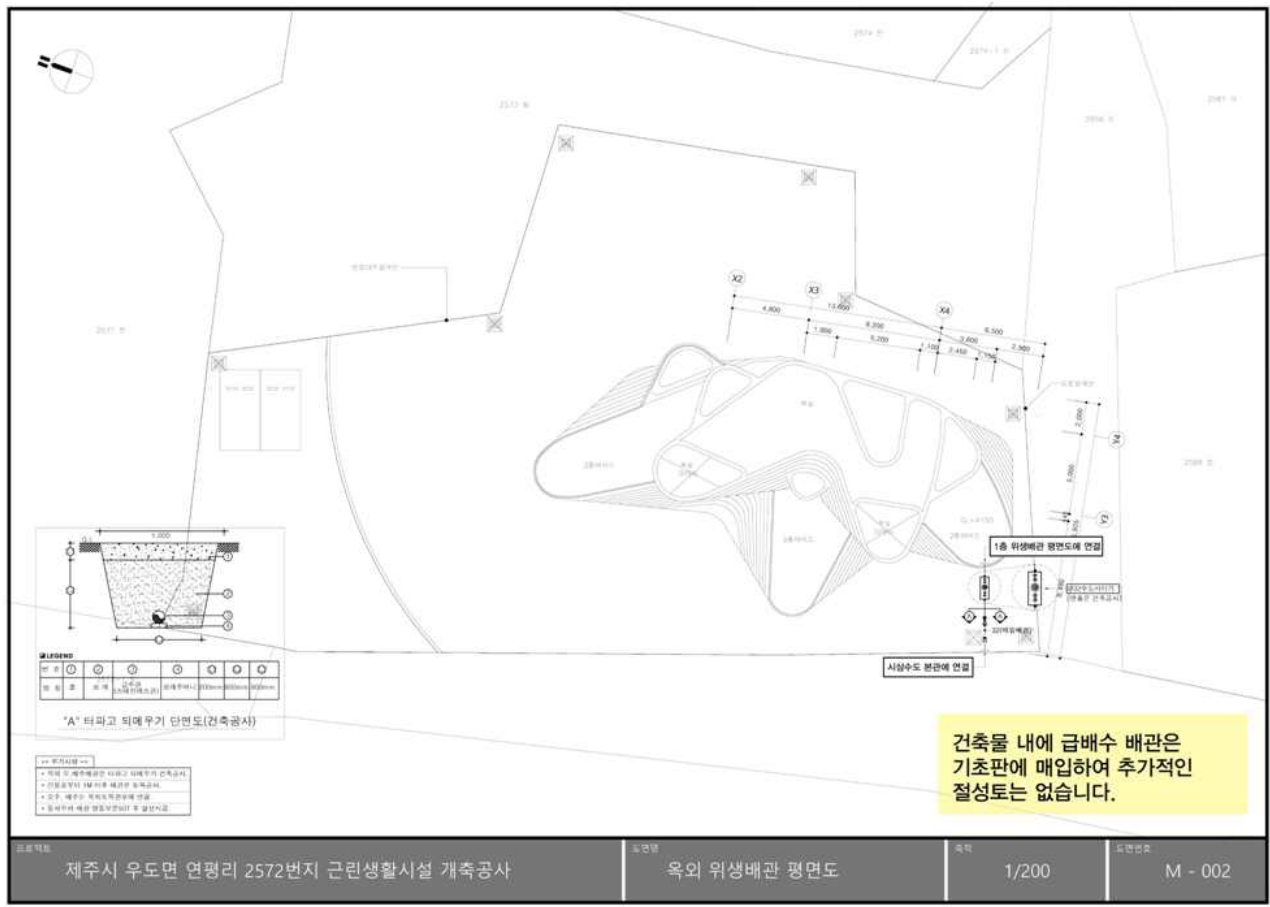
□ 현재건물 현황



프로젝트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72번지 근린생활시설 개축공사	도면명 대지주변현황도	목적 NONE	도면번호 A - 004
--	----------------	------------	-----------------



□ 개축건물 평면도



□ 현재와 개축후 비교



2. 「제주 용천동굴」 내외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내외 가로등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천동굴」 내외 가로등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 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 지정일 : 2006.02.0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가로등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43-8번지~월정리 214-6번지 (구좌읍 만장굴 삼거리~월정리 교차로)
 - 사업내용 : 가로등(H=10.0M) 67주, 가로등 제어함 2개소, L=1.3Km
 - ※ 4구역 가로등 48개는 허용기준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구분	산출근거	터파기면적 (㎡)	비고
총 터파기 면적	61.05+9.78+74.64+132.33+21.19+85.84+490.41+31.15+78.24+0.95	985.58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189m	61.05	지정구역
가로등기초(6개소)	1.63㎡ x 6개소	9.78	지정구역
관로터파기 (도로횡단구간)	0.622㎡ x 120m	74.64	2구역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409.69m	132.33	2구역
가로등기초(13개소)	1.63㎡ x 13개소	21.19	2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터파기 면적		298.99	
관로터파기 (도로횡단구간)	0.622㎡ x 138m	85.84	4구역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1518.31m	490.41	4구역
관로터파기 (보도블럭구간)	0.354㎡ x 88m	31.15	4구역
가로등기초(48개소)	1.63㎡ x 48개소	78.24	4구역
가로등제어반(2개소)	0.473㎡ x 2개소	0.95	4구역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개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2구역, 4구역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2구역	○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 전용 허용 ○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단, 현지반산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제주 용천동굴」 지정구역과 2구역, 4구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2020. 6. 21.)>

-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제주도 천연동굴 보전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연구과정에서의 진동영향 분석 자료에 의하면, “브레이커 작업 기준(1700rpm)으로 16m 이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진동속도가 0.07kine(0.7mm/sec)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용천동굴 상부에서의 다짐작업이나 암반굴착이 이루어질 경우, “용천동굴내에 기준치 이상의 진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됨(문화재 대상 발파진동의 경우 진동속도 0.2kine(2mm/sec), 건설장비 진동의 경우 진동속도 0.07kine(0.7mm/sec)허용한계)
- 따라서 신청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가 담보되기 전까지, 지정구역내에서의 가로등 설치의 일단 유보하고(기존 가로등 사용), 지정구역밖에서의 가로등 설치의 경우에도, 진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인력에 의한 기초 공사로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용천동굴 내부에 진동계측기를 설치하여 공사과정에서의 진동발생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준치 이상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 신설 가로등 전체(69개) 구간을 대상으로, 기초 공사과정에서의 용암동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 전 문화재위원(2020. 6. 6.)>

- 가로등 설치 지역은 UNESCO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인 만장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로등 설치의 필요하다고 판단됨.(참고 그림1)
- 그러나 아래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원칙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는 380m 19개소 설치 지역뿐만이 아니라, 67개소 1.3km(4구역까지)까지 모두인 것으로 판단됨
- 오랜 동안 수많은 차량의 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용천동굴이 지나가는 지역의 암반 피로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행되어야 함
- 땅파기(굴착)의 깊이가 1m를 넘고 있어, 가로등 설치 전구간(1.3km)에 대하여 토양층의 깊이를 파악하여 사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임.
- 토양층이 깊지 않아 암반이 나타나고, 새로운 용암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동굴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실제로 인근 행원리 구역에서 1132번 도로확장시 갓길(노면)에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 발달한 용암동굴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지표 두께 1m내외), 2009년 7월28일 조사하고 폐쇄 조치함.(참고 그림 2)

<*** 문화재 전문위원(2020. 6. 5)>

- 공익사업으로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가로등 설치로써 용천동굴 상부지표와 가장 인접한 지점이 약 40m이고 약 1.1m 터파기이기 때문에 영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대한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터파기를 준수해야 함
- 터파기 공사 시에 공사자재 및 쓰레기 등을 터파기한 구덩이에 넣지 않도록 해야함

(2) 지자체(*****) 의견(2020. 6. 22.)

- 구좌읍에서 신청한 가로등 설치구간 도로는 제주도를 일주하는 주요 간선 도로로서 관광객 및 도민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17년~19년 : 15건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가로등 설치 요청이 빈번한 구간 임
-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큼으로 인근 용천동굴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시공(인력터파기 또는 무진동 굴착 등) 적용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가로등 설치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정구역을 제외한 2구역에 설치하되 설치수량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
 - 진동 최소화를 위해 터파기는 인력터파기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 참고자료

□ 그림 1



그림 1. 만장굴 삼거리 주변의 일주도로(1132번 도로) 모습(2020.06.05. 촬영)

□ 그림 2



새로이 발견된 동굴입구(○표)와 주변 모습

동굴입구. 동굴천장의 무게(지표 무게)가 1m 내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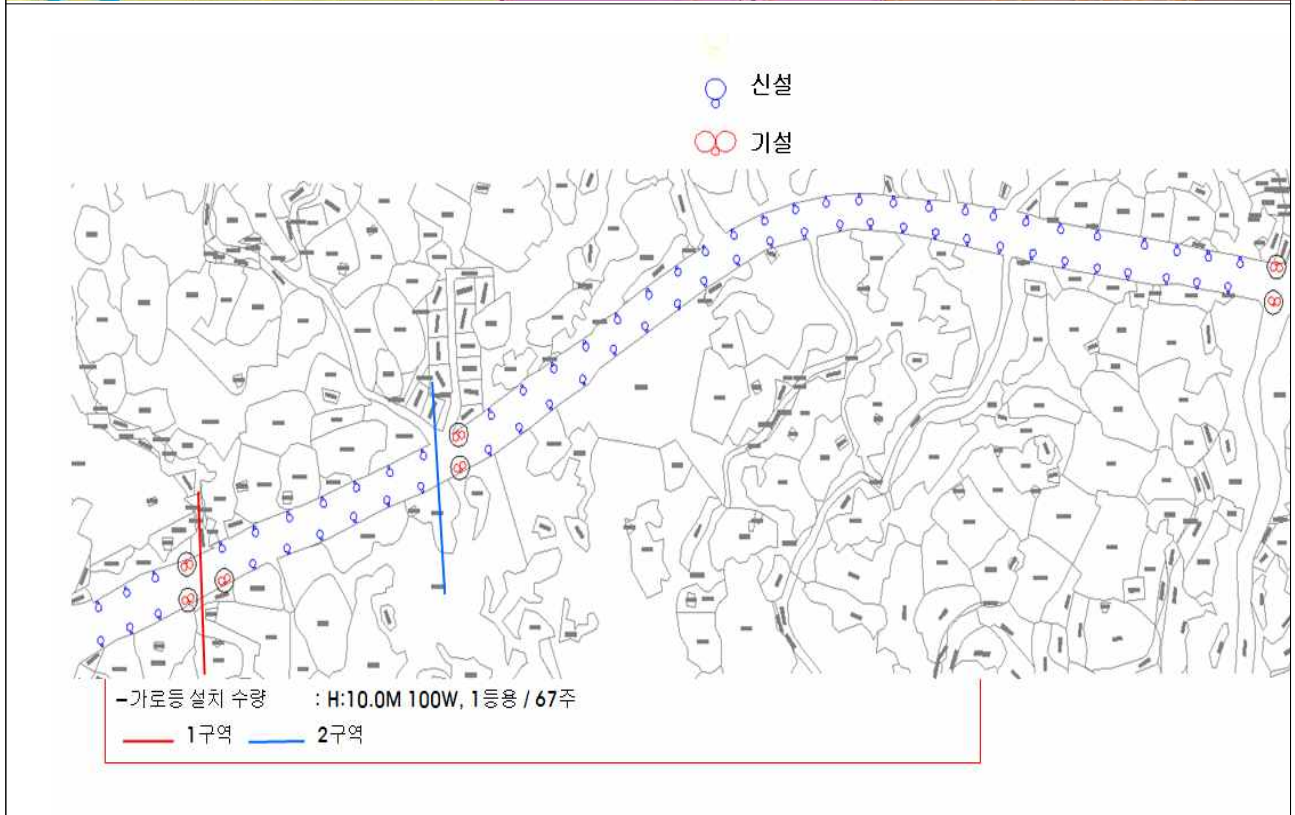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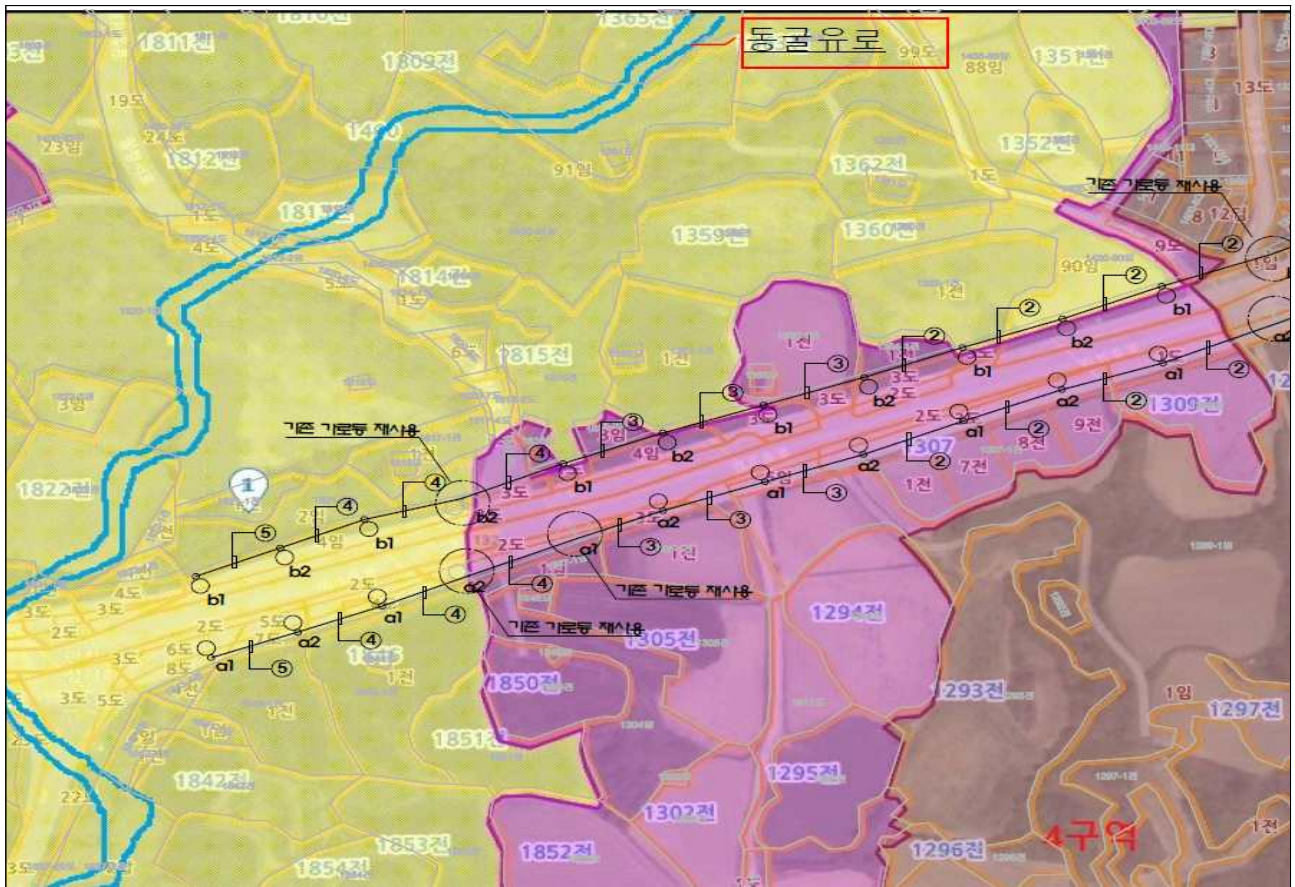


동굴내부에서 바라본 동굴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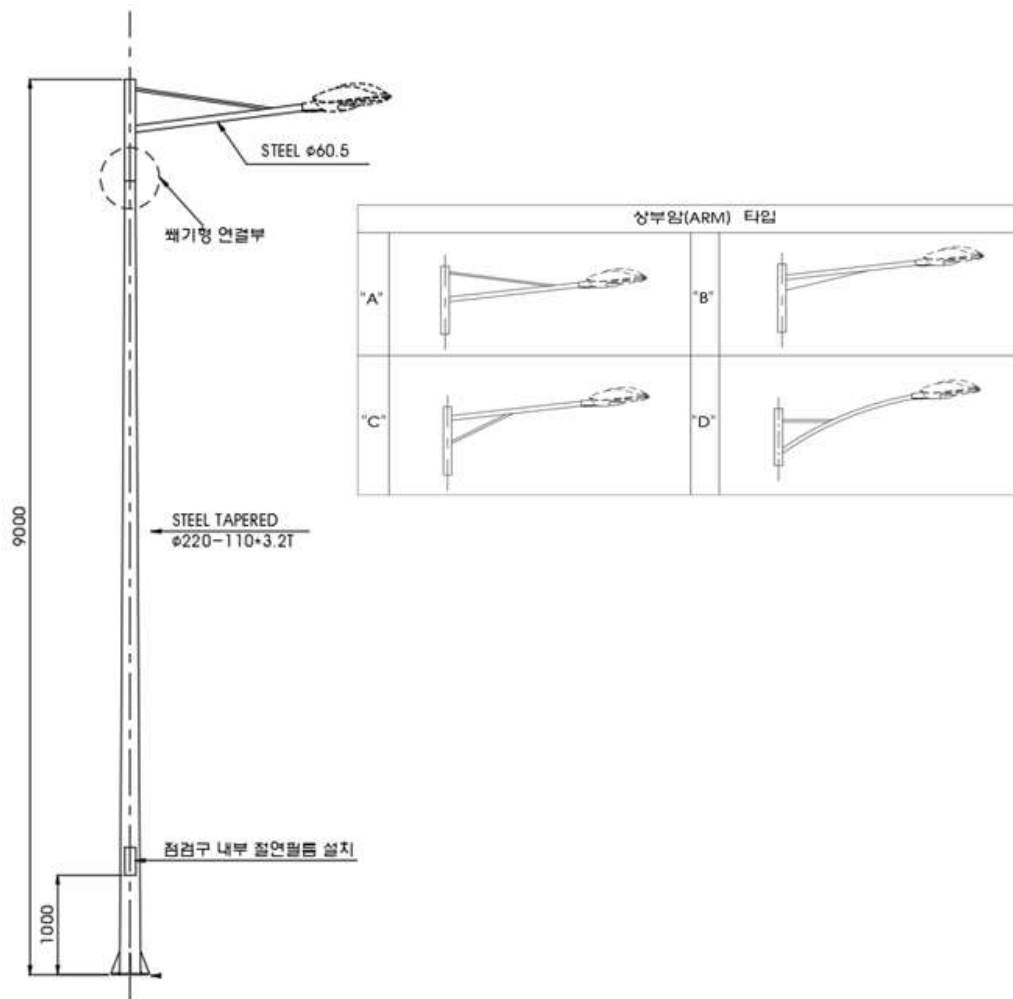
다양한 탄산염(석회질) 동굴생성물들이 발달한 모습

그림 2. 용원동굴 인근의 행원리 지역 일주도로(1132번 도로) 확장시 갓길(노면)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탄산염(석회질) 동굴생성물들이 잘 발달하고 있음. (2009.07.28.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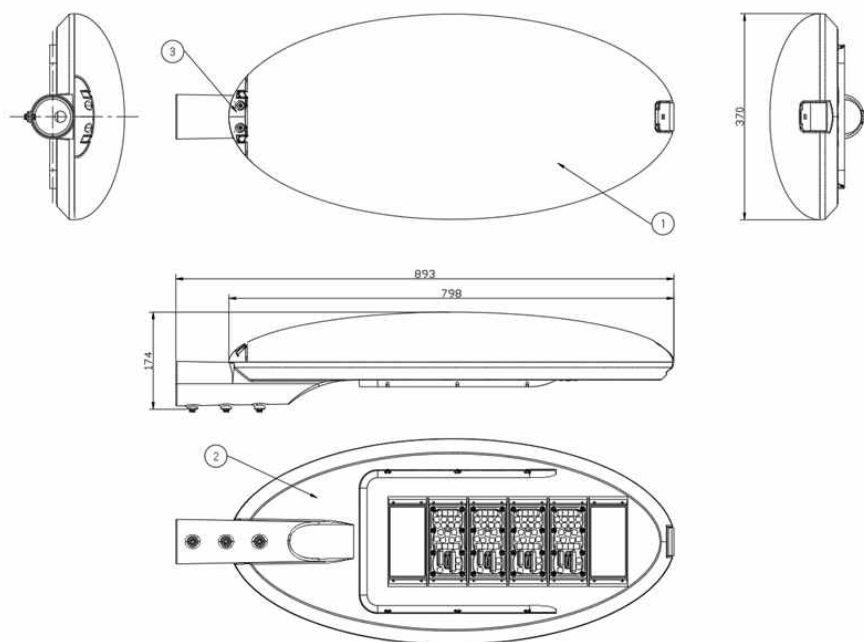
□ 지정구역과 연접 설치 위치도



□ 가로등 도면



- LED가로등기구 100W



3.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내 도로 확장 공사

가. 제안사항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 지 정 일 : 2019.10.02.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도로 확장 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및 산17-2도
 - 사업내용 : 도로 확장 공사(B=7.5m ~ 8.0m) L=118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월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문화재구역 내 도로를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20. 6. 4)

<*** 문화재위원>

- 석축으로 이루어진 도로변에 대한 확장 공사가 이 지역의 하천변과 하상에 분포하는 쥐라기 역암 바위(보호대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공사가 이 지역 문화재 가치의 교육적 활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설계와 시공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1) 옹벽 전면에 대한 석재 마감 시, 기존 석축을 구성하고 있는 쥐라기 역암과 고생대 석회암 바위들을 재사용(바위의 슬랩을 만들어 부착 등)
 - 2) 마감 석재 사용 후 남은 석축부 암석과 도로변 암반 사면에 대한 천공 과정에서 산출되는 암석들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로 활용
 - * 1)과 2)의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
 - 3) 도로확장에 의해 증가되는 공간의 일부를 이 지역 역암 바위의 관찰을 위한 접근성과 안내효과 향상(소규모 주차와 안내판 설치 공간 확보 등)에 할애

<*** 문화재위원>

- 탐방객의 안정성 확보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하천변 도로의 확장은 필요한 공사로 판단됨
- 현상변경 신청구역, 즉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의 공간은 대부분 역암 노두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를 위해 절개할 절벽 구간에서 역암 노두 단면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날 경우, 탐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음.(안내표지판 설치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내용이나 표기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확장 및 옹벽 설치 공사 기간 중 토사나 암설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문화재 지정구역 하상에 산재하고 있는 쥐라기 역암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2) 지자체(***) 의견(2020. 6. 4.)

-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은 노두의 생성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역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역 크기의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같은 시기에 생성된 우리나라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수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워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 2일 천연기념물 제556호로 지정되었음
- 이번 사업 대상지는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118m이다. 하천변을 따라 기 조성된 도로에 대하여 확장하는 공사로써 도로의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하고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환경이 매우 불량한 구간이므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 개설 시 인공석축을 쌓았고 역암의 노두는 분포하지 않는 구간으로 절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식 옹벽 시공법을 채택하였

으며, 외부 노출면에는 천연석재 마감으로 주변 경관과 이질감이 없도록 시공할 계획임. 또한, 옹벽 외부면 일부 구간에 안내판 및 역암의 단면을 설치하여 대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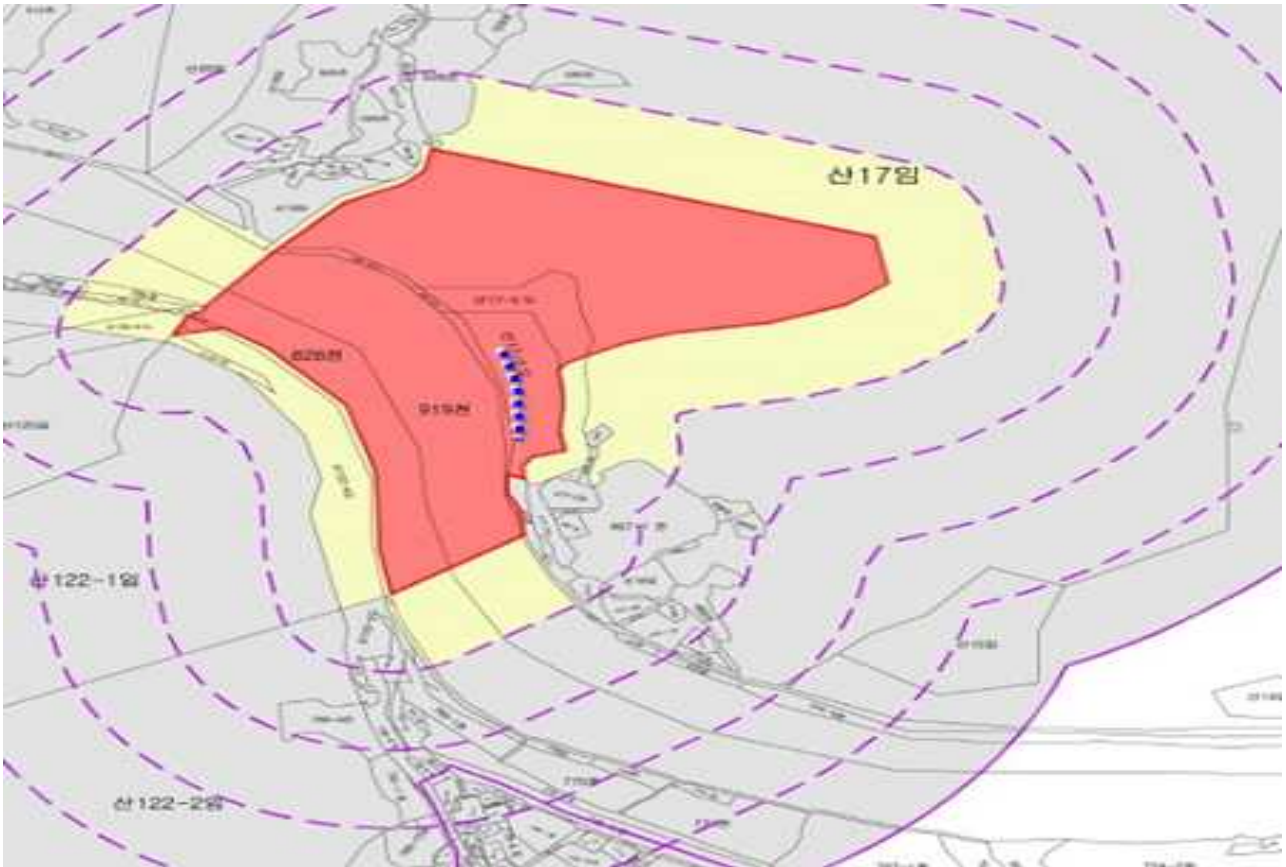
- 기존의 도로에서는 차량의 정차가 불가능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현장답사 활용도가 불가능하였으나 도로 확장을 통하여 차량의 임시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 활용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안전성 개선 및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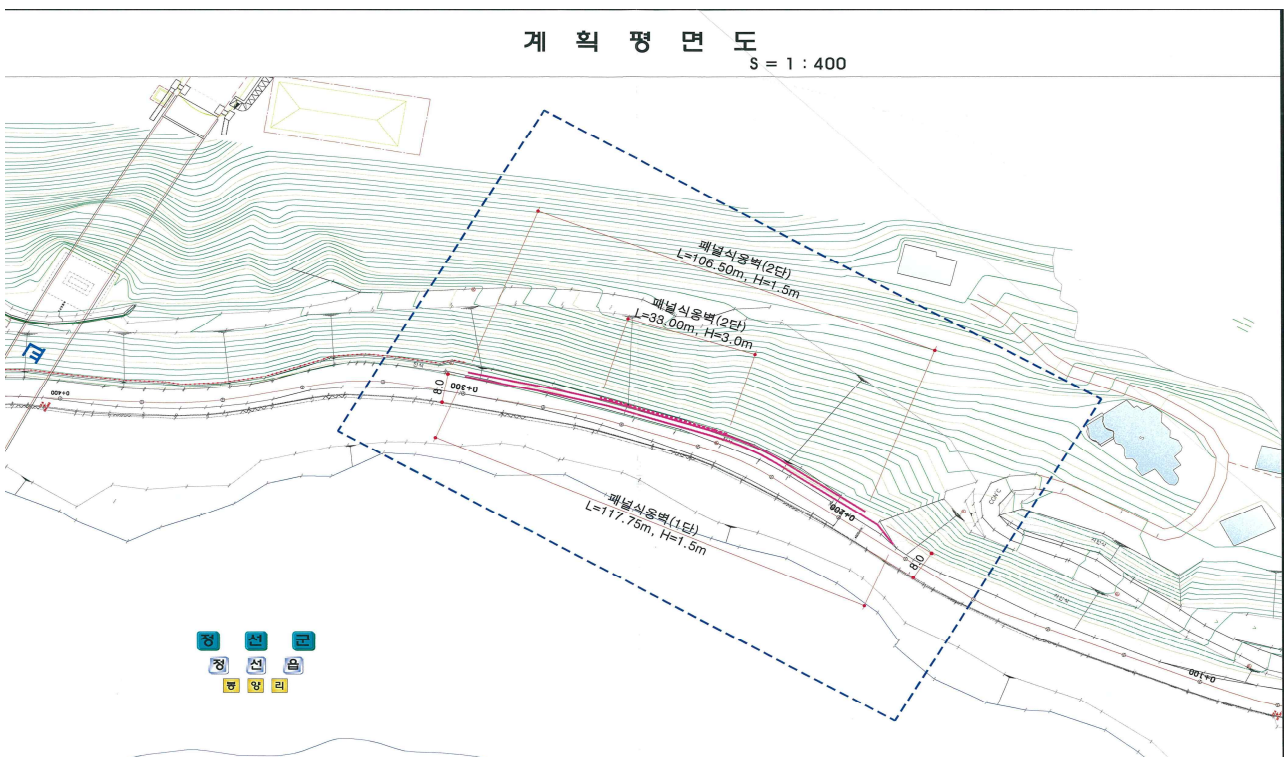
- 조건부 가결
 - 도로 확장에 따른 임시정차 구간에 쥐라기역암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안내판 등 설치
 - 공사 중 도출된 쥐라기역암은 지정구역 내 하천으로 반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9명

※ 참고자료

□ 사업대상 위치도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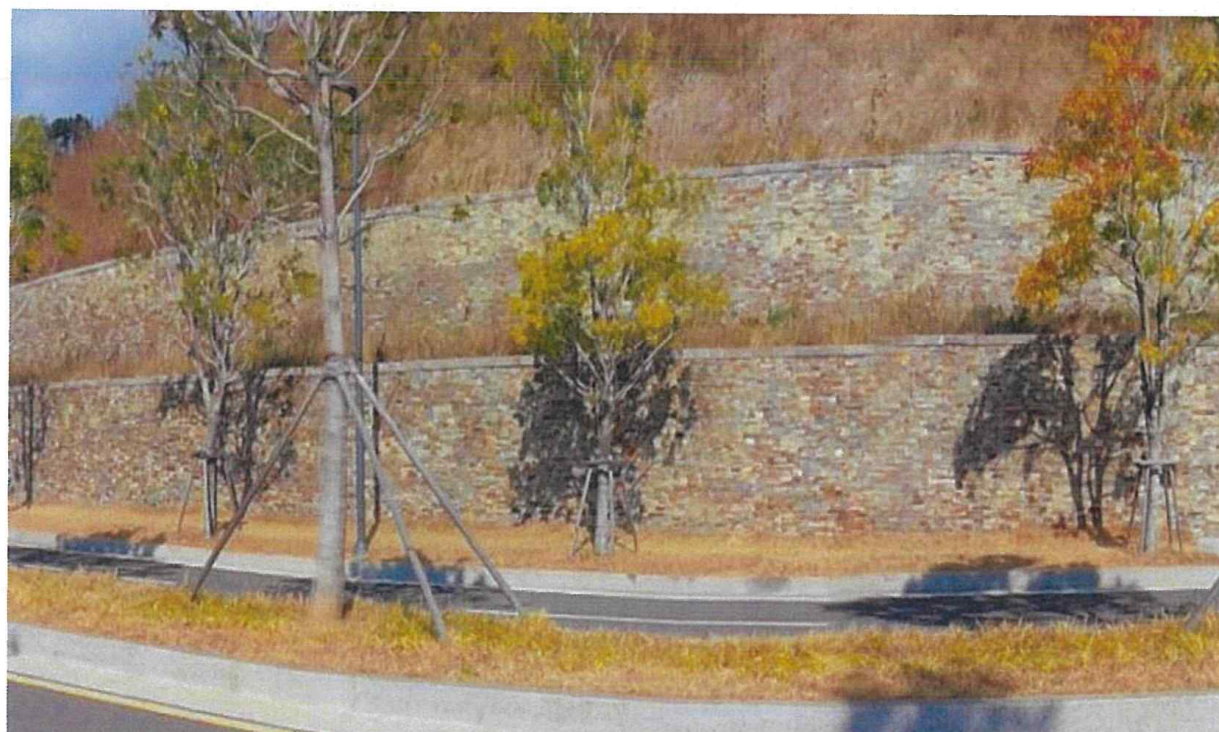
□ 현황사진



일반적인 패널식옹벽 시공 예



경관조성 패널식옹벽 시공예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2002.2.2.)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616번지 등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2288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3,109m², 신청면적 1,320m²

- 건축면적 129.39m², 연면적 95.52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평지붕, H5.1m

- 기존 상수도관 연결 L=77m, 오수정화조(자체침투조)

- 절토량 64m³, 성토량 523.63m³

- 울타리(제주 자연석 돌담쌓기) L=165m, H1.5m

- 조경식재 : 소나무 등 3종 45주, 관목류 2종 200주 / 기존 굴나무 57주 제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6m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연접한 위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20.5.20.)

<*** 문화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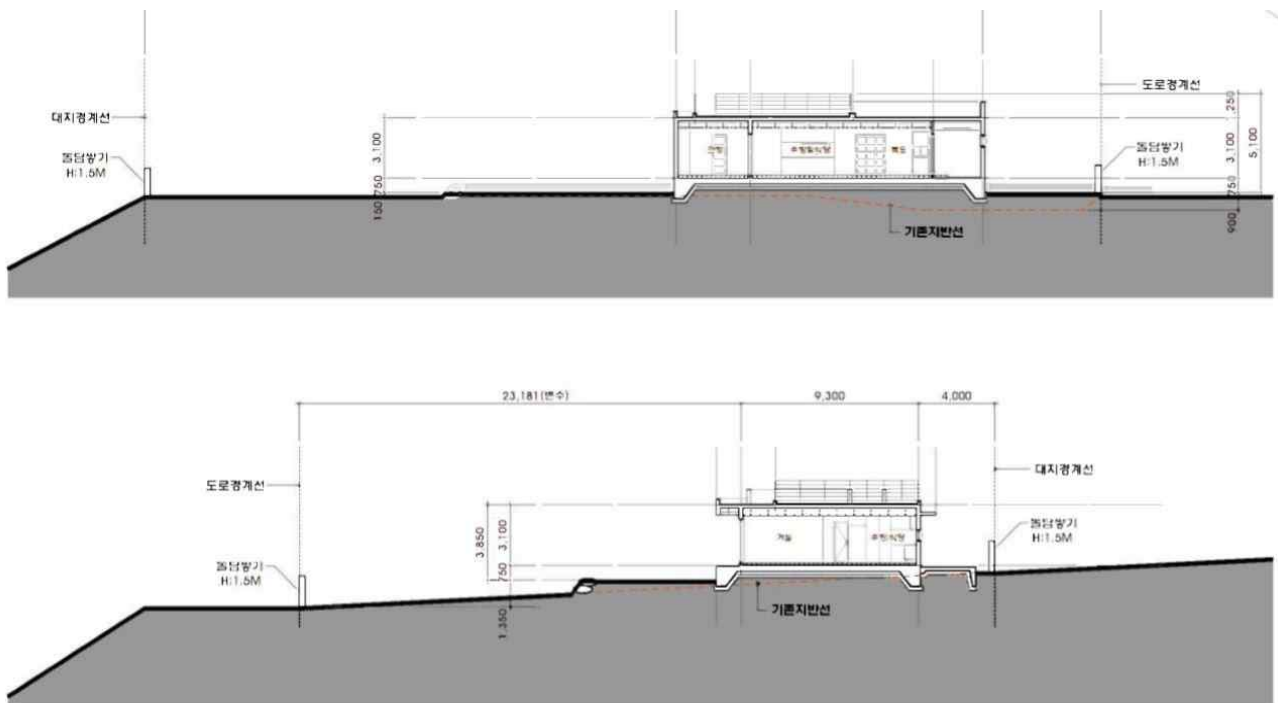
- 금번 신청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6m 이격된 지역에 5.1m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인접지에서의 문화재 조망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축의 범주를 벗어남
- 특히 현재 지반을 성토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건물 높이는 5.1m 이상으로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2) 지자체 의견

<**** / 2020.6.18.>

- 사업부지가 문화재구역 인접지역임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단독주택 도면)



사.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5.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6건)

가. 제안사항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천연기념물·명승 6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19호 (2020.1.21.)]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6건
 -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1968.11.25.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
 -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1997.12.30.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외
 -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2008.6.16.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외
 - 명 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2003.10.31.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양읍 단양리 산127-1 등
 -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2000.04.28지정.)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명승 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현 행>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그외구역	진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그 외 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처리		
공통 사항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나)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현 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8.0m 이하 (1층 이하, 한옥)	사찰 경내
제2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서쪽 진입로 상가
제3구역	최고높이 14.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북쪽 진입로 상가
그외구역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마이산도립공원 내
공통사항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한옥)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그 외 구역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다)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현 행>

구분	허용기준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수계 및 원지형(절·성토 금지) 보존
그 외 구역	진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한다.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그 외 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라)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현 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단, 토석 및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는 허가사항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포항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참관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천연기념물·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역조정 없이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적용 및 불필요한 사항 제외

(가)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나)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8m 이하(한옥)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다)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라)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 기존 1구역 허용기준안 유지

구분	허용기준
1구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절토와 성토 등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화석 등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참관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지자체(***) 의견 / 2020.5.22.>

- 기 고시되어 운용중인 허용기준 내용 중 형평성 문제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통해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6. 「제주 한림용암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용암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한림용암동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물은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3.25.)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연성 유지 및 동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외
 - 지정일 : 1971.09.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949-4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3.25.)	금회 신청 (2020.6.9.)	비고
부지면적	1,038m ²	1,038m ²	
연 면 적	128.82m ²	84.46m ²	△ 44.36m ²
건축물 높이	7.15m	7m	△ 0.1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공통사항 :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제주 한림용암동굴」 연접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3.25.)에서 부결되어 다소 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하였으나,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20. 6. 15)

<*** 문화재위원>

- 사업 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완충구역(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 현상 변경 행위가 동굴의 자연환경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현상변경 허가 신청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에 인접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경계부에 위치하며,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완충구역에 해당함.
-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진동, 오페수 유입, 사구 훼손 등은 소천굴 일대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특히 이와 같은 동굴 문화재 지정구역 인접한 곳에서의 지표 변화는 지하 동굴 환경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문화재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임)

<** 문화재 전문위원>

- 신청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접해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며,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완충구역에 해당됨(제주도, 2016). 지정구역과 1구역 경계에 위치한 신청지역 개발압력에 따른 향후 형질변경에 대한 영향성, 즉 건축물 한 동이 아닌 개별신청이 모여서 추가적으로 다량의 건축물(형질변경)에 의해서 동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박쥐서식, 오페수, 진도, 균열, 사구훼손 등)에 대해서 검토와 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러한 기준 마련이전까지는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에서는 제주도 지역 내 자연유산에 대한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검토와 보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의견(2020. 6. 9.)

- 사업구간은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1구역 개별심의 구역 해당되며 단독주택 1동, 지상 1층 높이 7.00m 규모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사업으로 인한 진동 발생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도출이 필요함.

(3) 1차 부결시(2020.3.25.)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2020.03.20.)>

- 건물 신축이 계획된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접해 있는 지역(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완충구역에 해당함
- 따라서 약 2m 규모의 절토를 포함하며, 건물 신축 과정에 예상되는 진동과, 신축 이후의 오폐수 유입의 위험 등이 소천굴과 그 주변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2020.03.18.)>

- 소천굴은 망오름에서부터 북동쪽 방향의 해안으로 분포하고 있으며(총 연장 약 4km), 동굴내부에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 미지형 등이 발달해 있고, 특히 탄산염동굴생성물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1입구 주변으로 박쥐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는 동굴로서, 종 다양성이 아주 우수한 동굴임
- 현상변경 신청구역은 문화재구역(지정구역)과 1구역의 경계지역으로서 도로 변과 연결된 평지구간임. 또한 소천굴 1입구와 인접한 곳(약 120m, 동굴상류 구간과는 약 100m-향후 정밀측량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분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에 위치하고 있음
 - * 건축물의 지반 절토 깊이 : 약 2m
 - * 오수정화조(자체침투조) 절토 깊이 : 약 2m
- 소천굴은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16)로서의 가치[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지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완충구역으로서의 1~3구역까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동굴임
- 향후 무분별한 건축물의 신축 및 형질변경에 의해서 소천굴에 미치는 영향(박쥐서식, 오폐수에 의한 오염, 진동, 균열, 사구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도 내 용암동굴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변경 건으로만 판단되

어서는 안 됨.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형질변경에 따른 영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이번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이면서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인 소천굴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도청과 문화재청에서는 국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내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의견(202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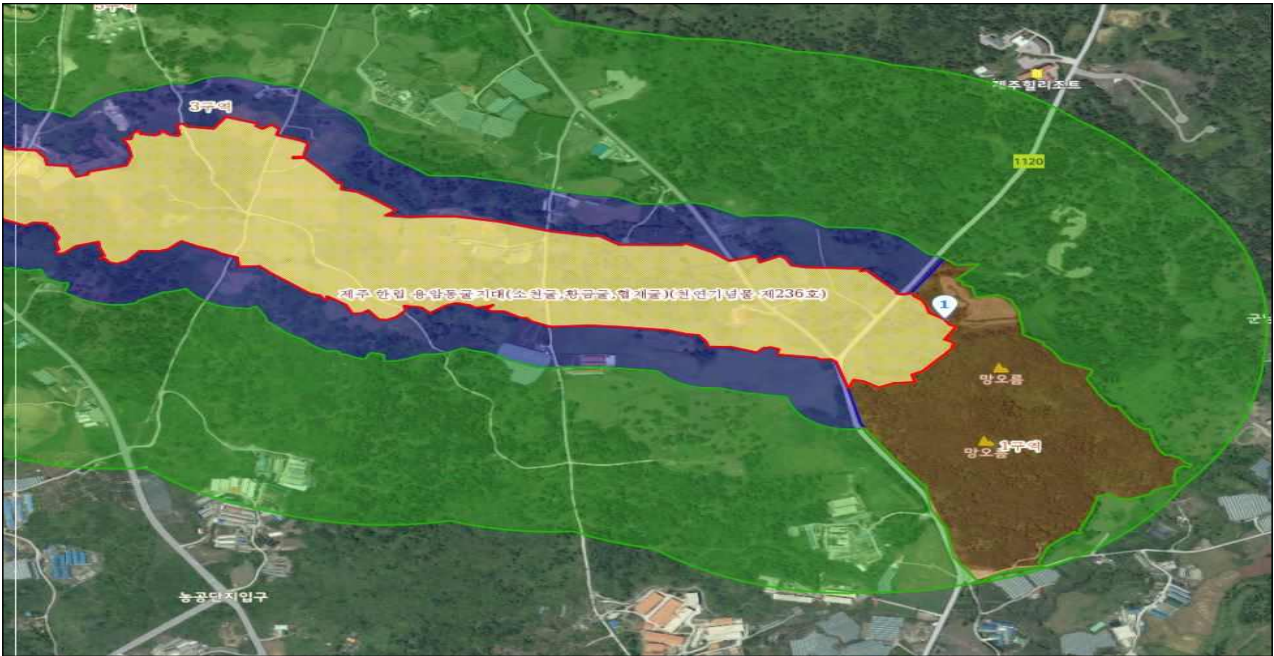
- 사업구간은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1구역 개별심의 구역에 해당되며 단독주택 1동, 지상 2층, 높이 7.15m 규모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사업으로 인한 진동 발생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도출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자연성 유지 및 동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 참고자료

□ 건립 위치도 및 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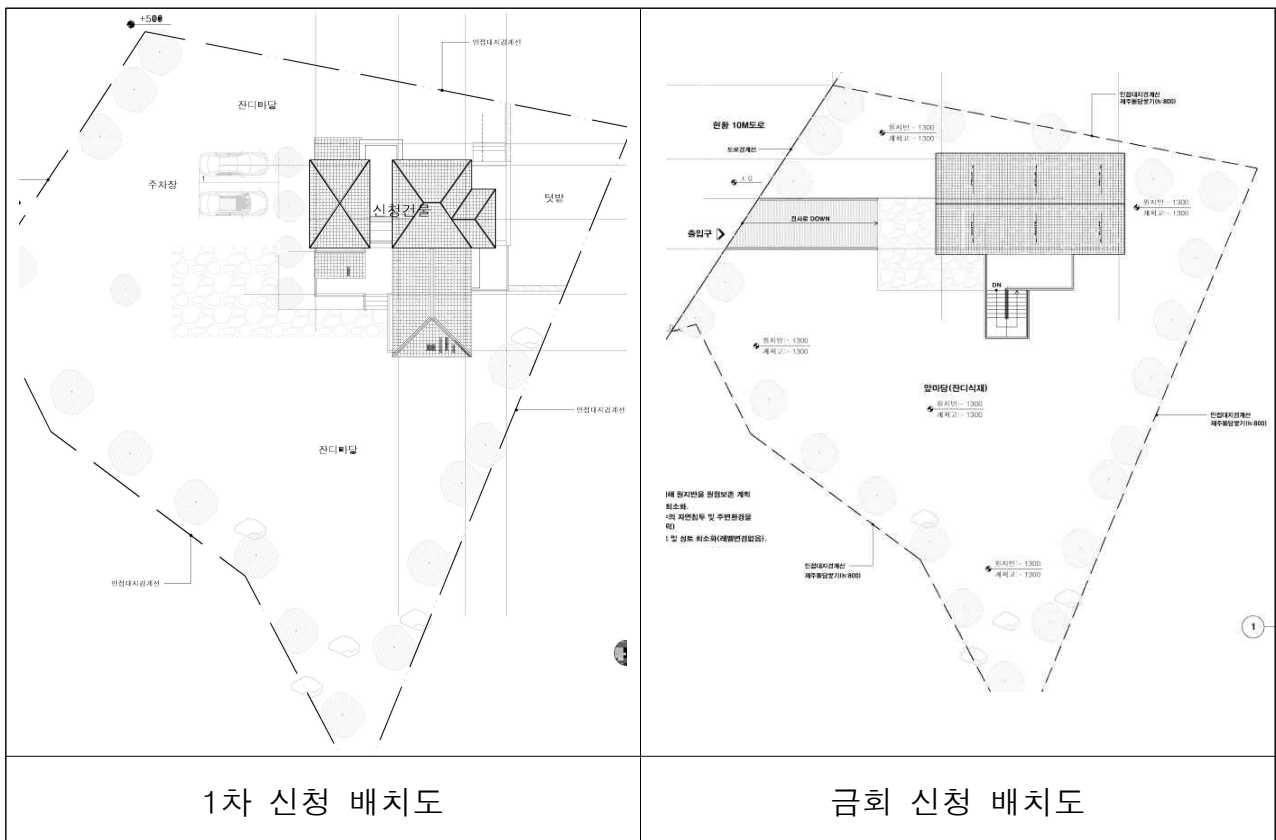
건립 위치도 (지정구역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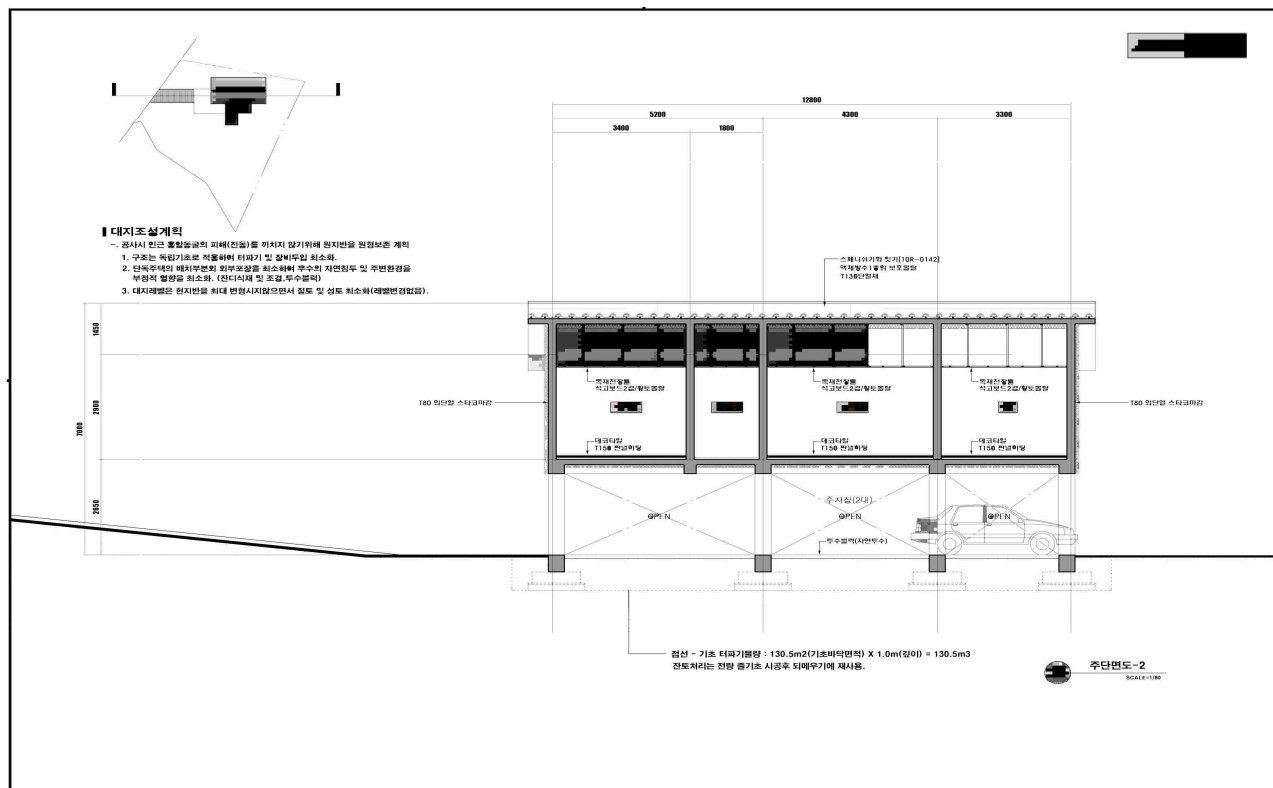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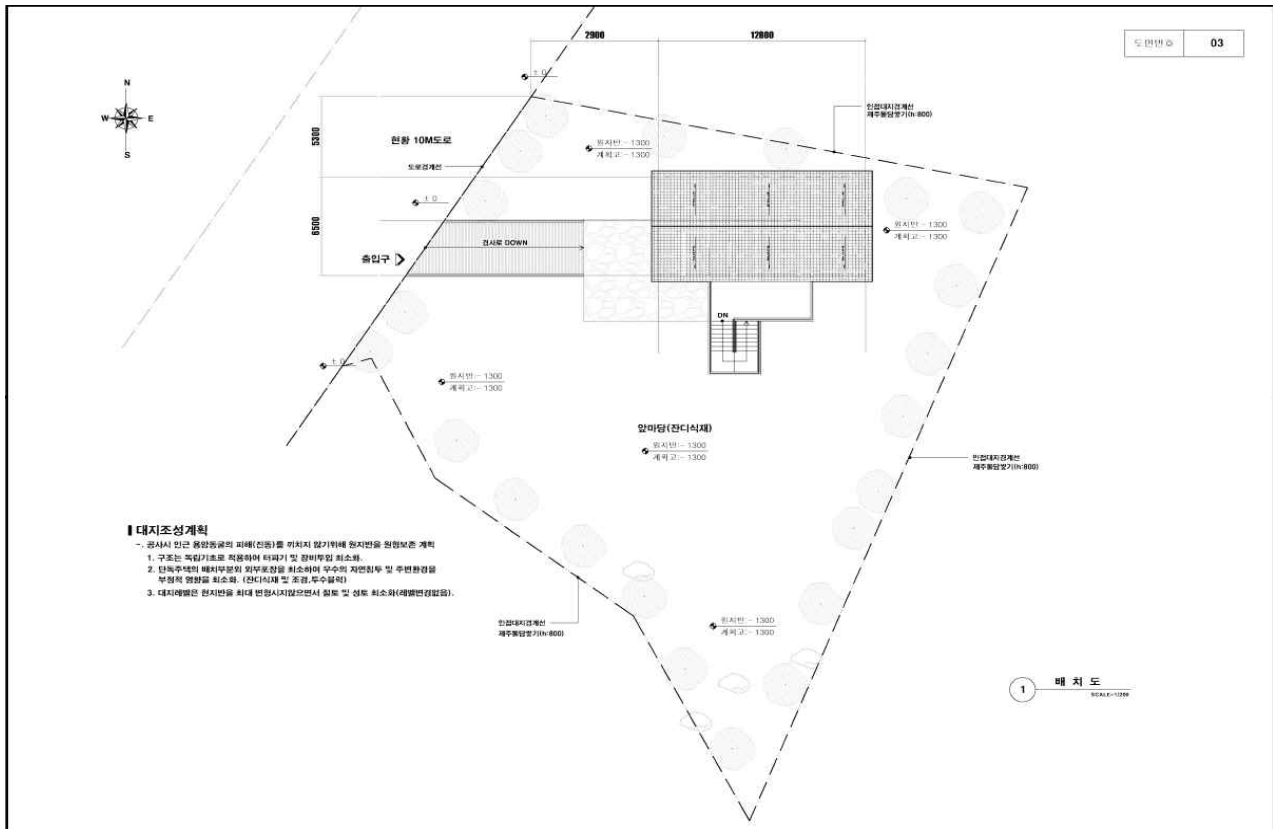
위성도



소천굴 입구(파란색 화살표 →) 건물 위치 (빨간색 화살표 및 원 → ○)
□ 1차 신청 및 금회 신청 비교



□ 건축배치도



7.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 지 정 일 : 2004.11.17.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9-12, 289-3번지
 - 사업내용
 - 규모 : 건축면적 168㎡(84㎡ x 2동), 연면적 336㎡,
 - 높이 : 2층, 최고높이 9.85m
 - 용도 : 소매점 1동, 음식점 1동
 - 외장 : 벽돌 + 징크 마감, 평지붕
 - 사업기간 : 2020.7.1. ~ 2021.7.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2020. 6. 7.)>

- 사업 대상지는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1구역 및 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석강 층암절벽 위에 위치하여 격포 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각적 노출이 높은 지점임
- 건물 신축 시 채석강 층암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검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20-05-08

8.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 한문 :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 영문 :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 지정종별 : 명승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등
- 지정가치
 -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활용된 역사성을 지니며,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섬등반도는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뛰어난 경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일몰경관에 있어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와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빼어난 지형경관을 연출함.
- * 근거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3호의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194,468㎡
- 관리단체 : 신안군

(3) 추진경과

- '16년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조사(일출·낙조)(****)
- '20.04.27.~'20.04.29 명승 지정 현지조사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구분	국문	한문	영문
제1안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제2안	신안 가거도 해돋이·해넘이	新安 可居島 日出·日沒	Sunrise·Sunset in Gageodo Island, Shinan
제3안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해넘이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日沒	Seomdeungbando Peninsula Sunset in Gageodo Island, Shinan

(2)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지질현황

- 독실산(639m)를 중심으로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20° 이상의 급경사면이 섬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지형은 해식애, 해식동, 자갈해안, 해안 단구 등과 단층 또는 절리의 방향을 따라 해안선이 발달한 수려한 해안지형과 풍화지형, 화산지형, 구조지형 등이 분포함.
- 가거도에 분포하는 암석들의 암층서는 하부로부터 퇴적암류, 안산암질암, 데사이트질암, 유문암, 암맥류, 제4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안산암질암이 가장 넓게 분포함.

○ 식생구성과 특징

-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제215호), 빨쇠오리(제450호) 및 흰날개해오라기, 바다직박구리, 황로, 찌르레기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함.
- 주변 해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내에는 무척추 동물인 개적구, 굽은줄격판담치, 상어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 큰따개비와 해조류인 감태, 비늘산호말, 툇, 작은구슬산호말 등이 서식함.
- 난대림으로 후박나무 군락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굴거리나무, 구실 잣밤나무,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감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자생 침엽수로는 소나무가 유일함.
- 멸종위기식물인 박달목서(II급), 으름난초(II급)가 서식하고, 풍란(I급)등이 드물게 자라고 있음. 한국 특산식물인 흑산도비비추, 처진물봉선, 가야산 은분취, 개죽도리풀, 새끼노루귀 홍도원추리 등과 음양곽, 현삼, 목단피, 갈근 등의 다양한 식물이 자생함.

○ 역사·문화와 경관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 기항지로서 이용이 된 역사성을 지님. 역사 문화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41호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빨쇠오리, 바다제비, 습새) 번식지」와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록문화재 제380호 「신안 소흑산도 등대」 등이 있음.
- 섬등반도는 2구 마을 동쪽으로부터 뻗어 내린 기암절벽의 반도로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음. 광활한 바다와 조화된 장엄한 웅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특히 낙조 경관이 아름답음.
-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봉이나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 등 특유의 지형미를 보여주는 대상물이 일출과 낙조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해가 출몰하는 지점에는 시각적 초점으로 작용하는 V자 형이 나타남. 대체로 섬에서 해수로 돌출된 지형물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해수면을 전개시키는 경관구도로 요약되는데, 암봉과 해수의 극적인 대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로운 시각적 체험을 가능케 함.

○ 연혁·유래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로,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嘉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음.
-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로 불리다가 1986년부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의 가거도(可居島)라 불렸으며, 일제강점기 때 ‘소흑산도’로 지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가거도로 불리고 있음.

(3) 지정 대상 및 범위

○ 3필지, 194,46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임	243,335	185,446	신안군
	산 177	임	2,134	2,134	기획재정부
	산 178	임	6,888	6,888	산림청
계	3필지		252,357	194,468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문화재구역(안)>

마. 검토의견 (*****)

- 섬등반도의 낙조 경관은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상징성·섬 특유의 장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음.
- 최근 관광·레저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자연유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를 위한 명승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04.27.~4.29.)

<*** 문화재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섬등반도 일원은 가거도 팔경의 하나로, 향리에 위치하며, 주요 역사문화 환경으로는 가거도 패총,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가거도 북쪽 경사면 자락에 위치한 패총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됨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嘉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호구총서』에 30여호가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음.
 -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嘉佳島, 可佳島)’로 불리다가 1986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의 가거도(可居圖)라 부르게 됨.
 -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해안경관을 형성하며,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상록활엽수 분포에 중요한 지리학적 위치에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가거도 팔경의 4경에 해당하며, 마을(향리) 동쪽으로부터 뻗어내린 기암절벽의 반도로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광활한 바다와 조화된 장엄한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특히 낙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조망 지점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3 가에 해당)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 섬등반도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 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조망·체험·경험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 경관
 - 병풍처럼 펼쳐진 섬등반도의 지형이 파노라믹 경관을 이루며, 해식애 곳곳에서 나타나는 암벽 식생과 해안 바위절벽 등이 시각적 흥미를 가지게 함.
 - 낙조 시 섬등반도는 해수면에 넓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붉은 색조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냄
- 원형 보존성
 - 섬등반도 일원의 암봉 및 기암절벽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섬등반도 일원은 해수와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장소로서, 특히 낙조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타 명승과 차별됨.
- 종합의견
 - 가거도 섬등반도 일원은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 등을 조망·체험·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의 경우 섬등반도 일원으로 경관조망점(예: 경도 125.099638, 위도 34073030 일원, 노을 전망대 일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섬등반도 일원을 제안하지만, 보존·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비계획의 경우는 가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안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남서단에 위치한 섬이며, 가거도의 주요 문화재로는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신안 소흑산도 등대, 신안 가거도 패총,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로,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

嘉島)로,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소흑산도’로 지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가거도로 불리고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힘차게 뻗어나가는 형상의 섬등 반도와 남덕여 일대를 중경으로 하는 일몰 경관은 매우 인상적이며, 가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서 명승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에는 도로, 등산로, 전망대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보완하여 활용할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이라는 영토성을 지닌 섬으로서, 3,000여 개 우리나라 섬 중에서 해발고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산(독실산, 639m)이 존재하는 섬임. 또한 가거도는 후박나무 군락, 구굴도 바다제비 서식지, 신석기시대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대 등 다양한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존재하는 섬임.

○ 경관

- 가거도는 중북부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주능선이 길게 뻗어 해안까지 이르는 산지 비중이 높은 섬임. 가거도의 기반암은 대부분 안산암, 석영안산암, 유문암질석영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 주변에 분포하는 사암과 규암은 수직절리가 잘 발달하여 급경사의 해식애가 장관을 이루고 있음. 급경사 절벽인 해식애 사이에는 해식동과 노치가 잘 발달해 있으며, 저파랑 에너지 지대인 북동부 일대에는 소규모의 자갈해안과 모래해안이 나타남. 습기 공급이 원활한 해양 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는 섬 내부의 산지 사면에는 얇은 토양층이 고루 덮여 있어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등 식생 군락이 잘 발달해 있음.

○ 원형 보존성

- 경관이 우수한 섬등반도와 장군봉 등의 경관 요소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차별성

-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인 가거도 일몰 경관은 중경으로서 섬등반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출 경관은 수평선 상에 멀리보이는 만재도와 몇몇 무인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몰경관에 있어서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가 바다 쪽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과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이루는 독특한 지형경관은 타 지역의 일몰과는 차별되는 빼어남을 지닌 경관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가거도가 지니는 중요한 상징성은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이라는 데 있음. 이러한 영토성을 지닌 가거도가 육지로부터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함. 하지만 가거도에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 비하여 도로, 전망대, 등산로, 등대 등 관광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일몰과 일출 경관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면 충분한 발전·유지 잠재력을 지닌 섬으로 판단됨. 더불어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해돋이 장소로는 두 곳이 있음. 하나는 장군봉 정상에서 남덕여 부근에서 보이는 일출을 조망하는 곳인데, 조사 당시 날씨 때문에 확인하지 못함. 다른 한 곳은 많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장소로서 해뜰목인데, 두 곳의 조망점이 있음. 첫 번째 조망점에서는 근경인 골짜기 사이로 원경의 일출을 볼 수 있음. 또한 두 번째 조망점은 해안에 다가선 곳이기 때문에 근경이 바로 해변이며, 원경으로 일출이 보임. 해뜰목 일출의 특징은 뜨는 해와 좌측으로 만재도가 함께 보인다는 것임.
-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일몰 장소로는 섬등 반도 전망대, 섬등 반도 인근 전망대(도로에 인접한 곳에 위치), 독실산 정상에서 항리 마을로 내려오는 등산로 등 3곳이 있음. 이 중에서 근경과 중경으로서 섬등 반도와 원경으로서 일몰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등산로 상에 위치함. 섬등 반도 인근 전망대는 접근성이 좋으며 기존의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안군 가거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서남단 이자 국경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근접한 중국 대륙의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서해 남단의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천연기념물 341호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소흑산도 등대와 함께 신석기 패총 등 자연생태적인 중요성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송나라때 중국의 사신,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당시 고려를 방문할 때 가거도를 지나면서 가거도를 협계산이라 칭하면서 송나라와 고려의 경계로 기록한 고문헌을 통해 서해 최서남단의 국경으로서 지정학적 가치와 함께 고지도에 등장하는 역사성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소흑산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원래의 이름인 가거도의 이름을 되찾아 바로 세우고, 가거도의 지형, 식물, 섬주민들의 삶에 연관된 전설, 문화유산과 더불어 섬등반도, 장군봉, 선녀봉 등의 수려한 경관과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늦게 지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해돋이와 해넘이의 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과 명승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 발전을 위하여 명승 지정을 위한 조사와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가거도에는 독실산 (693m)을 중심으로 급경사의 해안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해식애, 해식동굴, 해안의 단층등이 수려한 풍관을 이루고 있으며,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난대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식생적인 측면에서도 특정 상록활엽수림대의 북방 한계선을 해당되어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자연식생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져 가거도의 아름다운 해돋이와 해넘이의 명승자원과 더불어 명승으로서의 경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근거기준: 한국의 서해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상징성과 섬등반도를 주변으로 한 수려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해넘이의 장관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낼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의 명승 지정에 대한 장소는 역사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장군봉과 섬등반도가 해당되나, 장군봉일대의 접근성이 군부대의 시설 및 접근제한, 그리고 해넘이의 경관이 섬등반도 지역보다 떨어져 섬등반도를 주변으로 한 해넘이 명승지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일대의 사유지에 대한 활용동의, 역사성, 전설, 지역정비, 경관 조망을 위한 탐방로 및 데크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지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가거도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이용이 된 역사성과 함께, 주변의 구굴도의 바닷새류 번식지로서의 천연기념물 (341호), 환경부 특정도서로서의 개린도, 해양수산부에 의해 가거도 해역이 원시적 자연경관과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의 패총과 대한민국 근대 유산으로서의 등대(문화재청 등록문화재 380호)와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에 대한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섬등반도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해넘이의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 최남단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지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은 명승 지정에 따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적 아름다움과 함께 서해최남단의 외로운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착심을 가짐과 동시에 수천년을 가거도에 거주하면서 거친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인문적, 사회적 가치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

- 가거도의 해넘이에 대한 주요 경관요소는 해넘이 자체로서의 경관적 요소 보다는 장군봉 및 섬등반도지역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경관 요소로서 가치로움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며, 망망대해로 넘어가는 해넘이를 바라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낙조의 색이 섬등반도 일대의 해안절벽, 기암괴석뿐만 아니라 억새와 대나무의 일종인 이대(*Sasa japonica*) 군락과 어울어져 경관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경관성을 지니고 있음. 이와 더불어 주변에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잘 보존되어 군무하는 바닷새들의 활공이 최상의 해넘이 경관을 조성함.

○ 원형 보존성

- 해넘이 경관으로서 섬등반도 일대는 해안절벽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적인 경관으로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서해안은 낙조에 대한 명승지역인 꽃지와 채석강이외도 오이도를 비롯한 유명한 낙조 경관을 지닌 곳이 많지만, 서해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상징성과 함께 가릴 것 없는 망망대해로 지는 해넘이의 아름다움과 섬등반도가 주는 특별한 원시적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함께 조망함할 수 있음.

○ 종합의견

- 가거도의 해넘이와 해돋이를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돋이의 조망을 위한 해뜰목의 조망지점은 해안 절벽에 설치된 조망대보다는 100여미터 이전에 설치된 조망점에서의 경관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어 나타보이며, 해돋이 조망에서 인근의 섬인 만재도가 해돋이 경관에 배경이 되기는 하나 시야에서 너무 멀고 해뜰목 조망점까지 등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돋이 명승지정에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거도 해넘이의 명승 지정은 서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섬등반도를 배경으로 조망하는 조망점이 독실산 정상과 향리로 내려오는 도중 조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고 향리에서 섬등반도를 배경으로 한 경관이 가장 우수함. 우리나라의 서해 최서남단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상징성과 함께 가거도 해넘이의 명승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의 경우 향리를 중심으로 한 조망지역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다되며, 이 지역 일대의 사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새로운 조망대의 설치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가거항에서 향리까지의 도보 이동은 거리가 있어 쉽지 않으므로 해넘이 조망점까지의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섬연구소장>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며 역사문화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41호 구굴도와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멸치잡이 노래, 등록문화재 제380호 가거도 등대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가거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섬으로 불렸을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섬이다. 고대부터 황해 사단 향로상에 위치해 당나라, 송나라 등과 신라, 고려 등의 선박이 왕래할 때 거쳐가는 곳이었다. 송나라 때 고려를 다녀간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가거도가 협계산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1123년 5월28일 송나라 영파를 출발한 서공은 6월 2일 협계산을 지났다. 서공은 협계산을 중국과 고려의 경계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가가도라고 불리다 1896년 신안군이 전신인 지도군 창설 이후부터 가거도라 불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소흑산도라 이름 붙여졌으나

해방 이후 다시 가거도로 회복됐다. 가거도 주변 해역은 다양한 어류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어장이 발달해서 철마다 수많은 어선들이 몰려들고 중국과의 경계인지라 중국 어선들도 자주 몰려와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국경의 섬으로, 해양 영토 수호의 첨병으로서 가치도 큼.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섬등반도 해넘이 지정가치: 대한민국 서해상의 끝 섬은 백령도와 격렬비열도, 가거도 등이다. 이중 명승 8호 두무진이 있는 백령도가 동경 124도 53분으로 가장 서쪽의 섬이고 그 다음이 동경 125도06분'에 위치한 가거도 그 다음은 동경 125°34'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 끝섬, 격렬비열도는 서해 중부 끝섬, 가거도는 서해 최남단 끝섬이란 상징성이 있다. 모두 국가 영토의 최전방이란 상징성이 있고 영토 수호적 가치가 크다. 게다가 세 섬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들이다. 두무진은 명승 8호로 지정되었고, 격렬비열도와 가거도는 서해 끝섬이란 상징성에 더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관 가치가 있지만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거제도 섬등반도는 섬 내에서도 가장 서쪽이다. 국경의 섬 가장 서쪽에서 해넘이는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고 이국적 정취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해뜰목 지정가치: 해뜰목은 가거도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지명도 해뜰목이다. 해뜰목에서는 만재도 옆으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데 국경의 섬에서 일출 또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서해에서 해넘이 뿐만 아니라 해돋이도 동시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은 희귀하다.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돋이 명승지로 지정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관(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신안 가거도 일원에 대한 총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해넘이 명승지인 향리 마을 섬등반도 남쪽해안은 파도가 심해 전 해안에 크고 작은 해식동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 섬등반도 북쪽 암석해안은 파식작용의 영향으로 유문암 주상절리를 따라 대규모 수직 해식애가 발달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시스택을 형성하고 있다. 섬등반도 남서해안 해식애의 염풍화혈은 안산암과 유문암 간의 경연차에 따른 차별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규모가 크고 다채롭고 희귀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경관 가치가 크다. 섬등반도에서 중국 방향으로 지는 해넘이 풍경은 국토의 소중함을 거듭 일깨워주는 인문환경적 가치가 뛰어나다.

- 경 관
 - 가거도는 중앙에 위치한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북서-남동으로 길다. 전체적으로 산지가 해안까지 뻗어 있어 대규모 수직해식애와 해식동, 시스택, 폭포 등이 발달해 있다. 이들 해안지형이 상록활엽수림과 어우러져 다채롭고 수려한 경관을 제공한다. 독실산, 회룡산과 장군섬, 기둥바위와 돛바위, 섬등병풍바위와 망부석, 구절골짜 살구꽃, 망향바위와 소등일출, 남문등대와 고랫여, 국홀도와 칼바위 등이 가거 8경으로 꼽힌다. 가거 8경 모두가 명승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해넘이 장소인 섬등반도는 주상절리를 이루어 섬등병풍 바위라고도 불리는데 그 경관적 가치가 빼어나다.
- 원형 보존성
 - 섬등반도와 해뜰목을 비롯해 회룡산, 국홀도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섬등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해넘이 장소와 차별성이 있으며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종합의견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섬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경의 섬으로 영토수호의 최전방이란 가치가 크며 섬 전체가 태고의 자연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경관가치도 뛰어나다.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낙도라는 점이 섬의 난개발을 방지해 뛰어난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었다. 거거8경 모두가 명승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섬등반도나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돋이,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적 가치가 탁월하다. 하지만 가거도 또한 점차 5시간이 걸리던 육지와와의 교통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고 선편도 1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개발의 바람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로 파괴되기 전에 빼어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승으로 서둘러 지정해 보호해야할 이유가 충분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조망점 테크구간은 신안군에서 토지매입 및 허용기준 마련 시 1구역(개별심의)에 포함,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의 관리방안(별도지정) 모색(권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4명, 조건부 가결 5명

9. 「성락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사항임

추진경과

- ▶ 1992년 사적(제378호) 지정 이후 명승으로 재분류(명승 제35호, '08.1.8.)
- ▶ 지정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 '19.05.02.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 의혹 제기(***)
- ▶ '19.6~7월 :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검토, 지정과정 전반 재조사 실시
· '19.06.27. 성락원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 '19.6~10월 : 관계 전문가(고문헌, 각자, 조정 등) 자문회의(총 3회)
- ▶ '19.08.23. 성락원 논란 관련 공개토론회 실시
- ▶ '19.10~12월 : 법률 검토(*****) 및 역사 고증(*****) 등 실시 (총 4회)
- ▶ '20.05.04 :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해제내용

- 문화재명 : 명승 제35호 「성락원」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 지정면적 : 14,407m²
- 지정일 : 2008.01.08.
- 해제사유 : 명승 지정사유 및 명칭의 오류
- * (조성자)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선 철종대 이조판서 심상응' 부존재, (지정명칭) '성락원' 명칭 관련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1950년대 이후 조어진 것으로 판단됨

지정사유 2008.1.8.(문화재청고시 제2008-1호)

-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민가 정원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임.
-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별서정원으로 정자, 연못, 계류, 석정, 석상, 괴석 등 다양한 전통 양식의 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 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라. 검토의견 (*****)

- 명승 제35호 「성락원」은 그 지정명칭 및 지정사유 등의 오류가 일부 인정되는 바,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지정 해제함이 타당함.
- 다만 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다가, 고종 당시 서법으로 이름난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한 사실이 입증된 점,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사용된 점 등의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전통 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승으로서의 경관적·역사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문화재 명칭 및 지정사유를 수정하여 재지정함이 타당함

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05.04.)

<*** 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서울 내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이며,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한 정원으로, 대부분 사대부가 조성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정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 조영자 황윤명은 육교시사(六橋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조영자는 정원의 주요 경관요소인 수계를 이용한 연지 등의 배치 등에서 풍수적인 요소를 공간 속에 투영시켜 합리적인 건물배치를 하는 등 복거의 조건을 경관미학적으로 연계 등 **정원의 장소적 가치**가 뛰어나.
- 성락원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정원으로, 동시대의 여타의 정원과 비교하여, 단아하고, 섬세한 형태를 띄며, 건물을 중심으로 한 차경미적인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고, 연못, 계류 등 다양한 전통정원 요소들이 주변 자연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 특기사항으로 조사대상 정원의 조영자가 황윤명으로 밝혀진 것을 토대로 기존 ‘성락원의 명칭변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명승 제 35호 성락원은 지정 당시 관련 인물 ‘이조판서 심상응’부존재 및 각자의 진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재규명해 본 결과,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한 별서로 확인되었다. 명승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쌍괴당, 삼가루, 추성각 등 **역사적 건조물이 확인**되고, 영벽지 일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석가산을 배치하였으며, 영벽지, 쌍류동천, 송석, 장빙가 등 각자 6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역사성을 갖고 있음

- 아름다운 계류 및 연못, 식생, 지형 경관을 가진 경승지로서 각자가 남아 있으며, 고종대 내관이자 문인이 조성한 정원으로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으로 **희귀성**과 더불어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명승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1960년대 **통행로 개설, 축대 및 보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계류의 형태, 지형 경관, 연못, 식생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변형이 심각하며, 쌍괴당 등 역사적 건조물이 없어지고 본채, 송석정 등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 역사적 가치가 낮아짐.
- 향후 명승으로서 경관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지질 특성을 면밀히 조사분석 및 고증을 통하여 자연 계류 및 연못과 지형경관을 원형으로 회복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적합한 전통 식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외부로 부터 반입된 돌을 이용한 축석과 콘크리트 보는 철거되어야 하며, 송석정 북측의 못과 인접한 택지와 건물의 관계도 경관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성락원은 쌍류동천 계류를 끼고 아름다운 수목석(水木石) 풍광이 비밀스럽게 펼쳐진 별서명원 사례인데, 외부와는 시각적으로 단절된 세계이나 내명당수물길을 따라 내부로 진입하면서 점입가경을 만나게 되는 경관구조이다. 살림집 본채를 중심으로 10% 내외의 완만한 자연형 물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승하는 진출입동선체계를 반영하였고, 생토(生土)에 기반 한 토지이용 공간 구성체계를 설정했는데, ① 성락원 동문(洞門)에 해당하는 전원(쌍류동천과 용두가산), ② 본채와 동서방향으로 마주하는 내원(영벽지, 바위글씨, 소단폭포가 펼쳐진 수석 경관), ③ 가장 깊숙이 자리한 후원(송석정과 연못, 암반 계류, 고엽약수와 동산숲), ④ 담장 밖 마을길로 분절된 별원(저수지를 포함하는 뒷동산)으로 구분됨
- 별서원림은 ① 초대 원주(園主) 황윤명(1844-1916, 대한제국 고종조 내관 신분, 서법에 뛰어난 문인)의 별서경영과 2대 원주 의친왕 이강(1877-1955, 고종의 5남, 독립운동가)의 인물적 차별성과 역사성, ② 빼어난 자연수석경관이 현존하고, 조선 후기 명사들의 향유처이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명소성, ③ 경관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차경법과 수석경관, 영지(影池, 영벽지)기법, 천원지방 석가산, 누정각(삼가루, 추성각 산정, 계정), 정심수(雙槐樹), 송석(松石), 취병 등 전통조경 및 작정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탁월성, ④ 명인들의 바위글씨와 시문 등 금석예술, ⑤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

- 피난처로서의 역사교육 장소성, ⑥ 토속신앙과 도교 및 유교적 관념세계, 풍수적 자리잡기 및 비보경관 등 복합문화경관이 펼쳐지는 **독보적 별서명원사례임**
- 따라서, 해방이후 일부 건조물의 변형과 증축이 이루어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명승) 지정이후 지속적인 복원화 과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원형경관 회복, ② 관련인물의 특수성과 역사적 장소성과 명소성, ③ 원지형을 존중하며 구성한 점입가경의 경관구성 체계, ④ 불명료했던 원주와 원림요소 및 성격, 원형경관 등에 대한 사료적 고증, ⑤ 전통조경과 경관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정기법과 상징성, ⑥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서울권역의 독보적 원림 유산, ⑦ 문화재 지정과 고증, 그리고 보존관리와 복원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킨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승’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됨**
 - 이곳 원림의 명칭과 관련하여 ① 춘파유고에 기술된 쌍류동(雙流洞), 쌍계 등의 명칭과 장소성, ② 현존하는 입구 경내의 쌍류동천 바위글씨에 근거한 식별성 및 정체성 확보, ③ 별서 원주의 변화과정(황윤명→의친왕 이강→심상준)을 감안하여 특정인물 관련 명칭 부여 한계, ④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50년대 새롭게 작명된 ‘성락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으로 정정,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현재의 성락원은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때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최초 조영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락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음.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명칭은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성락원은 황윤영의 별서정원과 비교할 때 그 입지환경은 물론이고 원림의 규모, 형태, 기능의 측면에서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성락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중에서 **경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이에 동반하여 예술적 가치가 적지 않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재분류된 이후, 즉 2008~2009년 ‘성락원 복원화 사업’을 통해 성락원이 가지는 원래의 경관적 가치가 다소 회복된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재 가치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성락원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으로 기억될만한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외에서 별서정원의 조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므로 **학술적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경 관 성

- 조선시대의 명승지(名區) 북저동(北渚洞) 일대는 유상곡수연을 즐기던 곳
- 현재의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는‘북저동(北渚洞)’, 혹은 ‘도화동(桃花洞)’으로 불리웠는데, 윤기(尹愔)의 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자연경관이 뛰어난 ‘名區(명승지)’로서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愔, 1741~1826)가 남긴 시 ‘上巳遊北渚洞’에는 상사일에 유상곡수연을 하였던 기록이 있어 경관적 학술적(전통조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임. 우리나라에서 유상곡수연의 유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판단됨.

○ 역사성과 학술성

- 성락원에는 서로 다른 7개의 각자가 남아 있어, 이 별서 지역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역사적 문화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경관글씨체가 주목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주는 것으로 판단 됨. 그 가운데에는 ‘檣氷家’라고 쓴 추사 글씨체가 있음. 장빙가(檣氷家) 글씨에 완당(阮堂) 이라고 추사 김정희의 호가 새겨져 있음. 일설에 의하면 장외가(檣外家)라는 주장이 있지만 ‘담장 장(牆)’이 아니라 ‘돛대 장(檣)’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임. 따라서 장빙(檣氷)은 아주 기다란 고드름을 의미하고 있음. 게다가 ‘집 가(家)’자의 갓머리 부수가 쓰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더욱 별서 의미와 맞닿고 있음.
- 황윤명의 문집 춘파유고와 관련 문헌들에 기록된 건조물은 삼가루(三可樓), 초당(草堂), 쌍괴실(雙槐室) / 쌍괴누옥(雙槐陋屋), 추성각(秋聲閣) 등의 건축물이 확인됨
- 북저동 가운데 별서가 위치한 쌍류동은 특별히 구분되는 곳(城北洞中別有村)이었는데, 등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곳(藤蘿松竹境昏昏)으로, 명승지에 위치한 별서(名區卜築幾多年)이었음. 별서의 형태는 수원(隨園)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쇄원의 별서 형태와 비교할 만큼 심원(陋室深園遠世凡)의 특징적인 배치 형태를 보인 명원(莫道名園無定主)이었음.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문인내시라는 독특한 작정자와 왕족의 별서, 50년대 당시 국가적 필요성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 이후 전란과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도 대도시 내에 존속되어온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곳**임
- 그 중에서 한국정원의 관점에서는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이루는 입지적 특성과 공간구성, 경관연출 등에서 한국전통 정원의 미학이 잘 살아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서울시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민간정원으로서 의미와 희소 가치가 각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분명한 상태이므로,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면 수정, 반영하여 명승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락원이라는 이름도 관광지 개발 시점과 관련된 특정 시기의 산물임이 밝혀졌으므로 추후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토대로 한 재논의, 연구를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특정 시기의 유형적 자산만이 아니라 누적된 다양한 시간적 층위와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선말 황윤명의 정원만이 아니라 왕족의 별서, 관광지로서 성락원, 이후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춘파유고』의 시문과 『정선총쇄록』 등의 기록 등과 일치하는 곳으로 정원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검증되고 지형 및 유적 유구 등이 대체적으로 보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원문화사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600년 서울 도읍의 대표적 정원문화가 대부분 소실 및 멸실 된 상황에서 지금껏 보존되어 전해지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8명, 조건부 가결 2명

10.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재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을 재지정하는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명승 「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재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 한문 : 서울 城北洞 雙流洞天
 - 영문 : Ssangnyudongcheon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 지정종별 : 명승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 지정가치
 - (역사성·학술성)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고종 대의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하여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사용된 곳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 보존·연구의 가치가 있음
 - (경관성)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구성 및 경관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음
- 문화재지정구역 : 18필지 / 14,407m²
- 관리단체 : 서울시 성북구

라. 문화재 현황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구분	문화재명 (국문, 한문, 영문)
제1안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서울 城北洞 雙流洞天 Ssangnyudongcheon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제2안	서울 성북동 쌍류동 서울 城北洞 雙流洞 Ssangnyudong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제3안	쌍류동천 雙流洞天 Ssangnyudongcheon Garden
제4안	쌍류동 雙流洞 Ssangnyudong Garden
제5안	이강공 별서 李塏公 別墅 Yi gang's Garden
제6안	서울 성북동 별서 서울 城北洞 別墅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2)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경관

- 북한산 문수봉에서 뻗어 내린 구준봉을 배경으로 남산 잠두봉을 바라보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북저동(北渚洞), 혹은 북송아 꽃이 아름다워 도화동(桃花洞)으로도 불리던 성북동에 위치한 전통 별서정원임
- 두 줄기의 개울물이 하나로 모이는 곳인 쌍류동천(雙流洞天)과 지형의 결함을 보완한 용두가산(龍頭假山)을 거쳐 본체가 있는 안 뜰로 들어서면, 자연 암반에 물이 고이는 영벽지(影碧池)와 그 주변의 바위에 새긴 여러 각자(刻字), 암반을 조금 쪼아 만든 물길과 폭포 등 물을 처리하는 전통적 기법 등이 아름다움. 영벽지 상류에는 고엽약수(枯葉藥水), 송석(松石) 각자, 현대시대에 지어진 송석정(松石亭) 등이 주변의 자연 숲에 둘러싸여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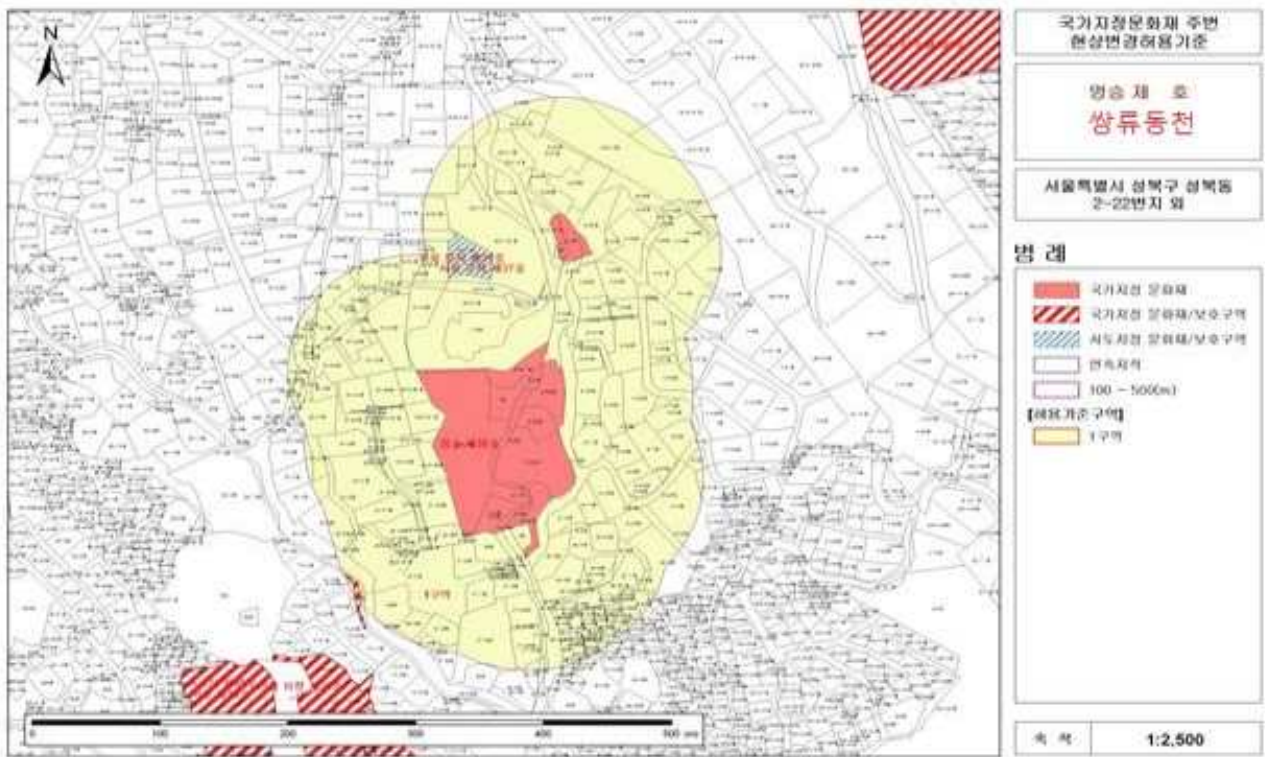
○ 연혁 유래

- 이 별서를 만든 사람은 조선시대 문인이자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며, 이는 『춘파유고(春坡遺稿)』 <인수위소지(引水爲小池)>와 오형묵의 「총쇄록(叢瑣錄)」의 별서 방문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조성연대는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이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하였다는 <일편단충>(김규복 발문) 기록에 따라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의친왕 이강(1877~1955)의 별궁으로도 사용하는 등 민가정원의 여러 소유자를 거쳐 가며 보존되어왔음을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 1921), 경성부교열(1936)을 통하여 알 수 있음

(3) 지정 범위 및 허용기준

○ 18필지 / 14,407m²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	대	2,536	2,536	사유
	2-95	대	1,021	1,021	사유
	2-96	대	654	654	사유
	2-98	대	641	641	사유
	5-1	대	601	601	사유
	5-2	대	178	178	사유
	7	대	645	645	사유
	8-5	유지	142	142	사유
	8-6	대	456	456	사유
	8-7	구거	40	40	사유
	8-8	대	155	155	사유
	8-10	대	3	3	사유
	산12-3	임야	5,712	5,712	사유
	산12-7	임야	724	724	사유
	8	전	119	105	사유
	8-1	유지	555	411	사유
	8-29	임야	1,324	164	사유
	산11-10	임야	582	219	사유
계	18필지		16,088	14,407	



* 1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마. 검토의견 (*****)

- 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다가, 고종 당시 서법으로 이름난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한 사실이 입증된 점,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사용된 점 등의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 다양한 전통정원 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명승으로서의 경관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기존 「성락원」에서 문화재 명칭 및 지정사유를 수정하여 재지정함이 타당함

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05.04.)

<*** 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서울 내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이며,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한 정원으로, 대부분 사대부가 조성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정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 조영자 황윤명은 육교시사(六橋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조영자는 정원의 주요 경관요소인 수계를 이용한 연지 등의 배치 등에서 풍수적인 요소를 공간 속에 투영시켜 합리적인 건물배치를 하는 등 복거의 조건을 경관미학적으로 연계 등 **정원의 장소적 가치**가 뛰어나.
- 성락원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정원으로, 동시대의 여타의 정원과 비교하여, 단아하고, 섬세한 형태를 띄며, 건물을 중심으로 한 차경미적인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고, 연못, 계류 등 다양한 전통정원 요소들이 주변 자연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 특기사항으로 조사대상 정원의 조영자가 황윤명으로 밝혀진 것을 토대로 기존 ‘성락원의 명칭변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명승 제 35호 성락원은 지정 당시 관련 인물 ‘이조판서 심상응’부존재 및 각자의 진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재규명해 본 결과,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한 별서로 확인되었다. 명승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쌍괴당, 삼가루, 추성각 등 **역사적 건조물이 확인**되고, 영벽지 일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석가산을 배치하였으며, 영벽지, 쌍류동천, 송석, 장빙가 등 **각자 6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역사성**을 갖고 있음
- 아름다운 계류 및 연못, 식생, 지형 경관을 가진 경승지로서 각자가 남아 있으며, 고종대 내관이자 문인이 조성한 정원으로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으로 **희귀성**과 더불어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명승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1960년대 **통행로 개설, 축대 및 보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계류의 형태, 지형 경관, 연못, 식생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변형이 심각하며, 쌍괴당 등 역사적 건조물이 없어지고 본재, 송석정 등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 역사적 가치가 낮아짐.
- 향후 명승으로서 경관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지질 특성을 면밀히 조사분석 및 고증을 통하여 자연 계류 및 연못과 지형경관을 원형으로 회복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적합한 전통 식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외부로 부터 반입된 돌을 이용한 축석과 콘크리트 보는 철거되어야 하며, 송석정 북측의 못과 인접한 택지와 건물의 관계도 경관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성락원은 쌍류동천 계류를 끼고 아름다운 수목석(水木石) 풍광이 비밀스럽게 펼쳐진 별서명원 사례인데, 외부와는 시각적으로 단절된 세계이나 내명당수물길을 따라 내부로 진입하면서 점입가경을 만나게 되는 경관구조이다. 살림집 본재를 중심으로 10% 내외의 완만한 자연형 물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승하는 진출입동선체계를 반영하였고, 생토(生土)에 기반 한 토지이용 공간 구성체계를 설정했는데, ① 성락원 동문(洞門)에 해당하는 전원(쌍류동천과 용두가산), ② 본재와 동서방향으로 마주하는 내원(영벽지, 바위글씨, 소단폭포가 펼쳐진 수석 경관), ③ 가장 깊숙이 자리한 후원(송석정과 연못, 암반 계류, 고엽약수와 동산숲, ④ 담장 밖 마을길로 분절된 별원(저수지를 포함하는 뒷동산)으로 구분됨
- 별서원림은 ① 초대 원주(園主) 황윤명(1844-1916, 대한제국 고종조 내관 신분, 서법에 뛰어난 문인)의 별서경영과 2대 원주 의친왕 이강(1877-1955, 고종의 5남, 독립운동가)의 인물적 차별성과 역사성, ② 빼어난 자연수석경관이 현존하고, 조선 후기 명사들의 향유처이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명소성, ③ 경관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차경법과 수석경관, 영지(影池, 영벽지)기법, 천원지방 석가산, 누정각(삼가루, 추성각 산정, 계정), 정심수(雙槐樹), 송석(松石), 취병 등 전통조경 및 작정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탁월성, ④ 명인들의 바위글씨와 시문 등 금석예술, ⑤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 피난처로서의 역사교육 장소성, ⑥ 토속신앙과 도교 및 유교적 관념세계, 풍수적 자리잡기 및 비보경관 등 복합문화경관이 펼쳐지는 **독보적 별서명원사례**임

- 따라서, 해방이후 일부 건조물의 변형과 증축이 이루어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명승) 지정이후 지속적인 복원화 과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원형경관 회복, ② 관련인물의 특수성과 역사적 장소성과 명소성, ③ 원지형을 존중하며 구성한 점입가경의 경관구성 체계, ④ 불명료했던 원주와 원림요소 및 성격, 원형경관 등에 대한 사료적 고증, ⑤ 전통조경과 경관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정기법과 상징성, ⑥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서울권역의 독보적 원림 유산, ⑦ 문화재 지정과 고증, 그리고 보존관리와 복원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킨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승’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됨
- 이곳 원림의 명칭과 관련하여 ① 춘파유고에 기술된 쌍류동(雙流洞), 쌍계 등의 명칭과 장소성, ② 현존하는 입구 경내의 쌍류동천 바위글씨에 근거한 식별성 및 정체성 확보, ③ 별서 원주의 변화과정(황윤명→의친왕 이강→심상준)을 감안하여 특정인물 관련 명칭 부여 한계, ④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50년대 새롭게 작명된 ‘성락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으로 정정,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현재의 성락원은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때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최초 조영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락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음.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명칭은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성락원은 황윤영의 별서정원과 비교할 때 그 입지환경은 물론이고 원림의 규모, 형태, 기능의 측면에서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성락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중에서 **경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이에 동반하여 예술적 가치가 적지 않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재분류된 이후, 즉 2008~2009년 ‘성락원 복원화 사업’을 통해 성락원이 가지는 원래의 경관적 가치가 다소 회복된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재 가치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성락원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으로 기억될만한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외에서 별서정원의 조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므로 **학술적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경관성

- 조선시대의 명승지(名區) 북저동(北渚洞) 일대는 유상곡수연을 즐기던 곳
- 현재의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는‘북저동(北渚洞)’, 혹은 ‘도화동(桃花洞)’으로 불리웠는데, 윤기(尹愔)의 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자연경관이 뛰어난 ‘名區(명승지)’로서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愔, 1741~1826)가 남긴 시 ‘上巳遊北渚洞’에는 상사일에 유상곡수연을 하였던 기록이 있어 경관적 학술적(전통조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임. 우리나라에서 유상곡수연의 유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판단됨.

○ 역사성과 학술성

- 성락원에는 서로 다른 7개의 각자가 남아 있어, 이 별서 지역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역사적 문화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경관글씨체가 주목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주는 것으로 판단 됨. 그 가운데에는 ‘檣氷家’라고 쓴 추사 글씨체가 있음. 장빙가(檣氷家) 글씨에 완당(阮堂) 이라고 추사 김정희의 호가 새겨져 있음. 일설에 의하면 장외가(檣外家)라는 주장이 있지만 ‘담장 장(牆)’이 아니라 ‘돛대 장(檣)’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임. 따라서 장빙(檣氷)은 아주 기다란 고드름을 의미하고 있음. 게다가 ‘집 가(家)’자의 갓머리 부수가 쓰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더욱 별서 의미와 맞닿고 있음.
- 황윤명의 문집 춘과유고와 관련 문헌들에 기록된 건조물은 삼가루(三可樓), 초당(草堂), 쌍괴실(雙槐室) / 쌍괴누옥(雙槐陋屋), 추성각(秋聲閣) 등의 건축물이 확인됨
- 북저동 가운데 별서가 위치한 쌍류동은 특별히 구분되는 곳(城北洞中別有村)이었는데, 등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곳(藤蘿松竹境昏昏)으로, 명승지에 위치한 별서(名區卜築幾多年)이었음. 별서의 형태는 수원(隨園)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쇄원의 별서 형태와 비교할 만큼 심원(陋室深園遠世凡)의 특징적인 배치 형태를 보인 명원(莫道名園無定主)이었음.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문인내시라는 독특한 작정자와 왕족의 별서, 50년대 당시 국가적 필요성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 이후 전란과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도 대도시 내에 존속되어온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곳**임
- 그 중에서 한국정원의 관점에서는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이루는 입지적 특성과 공간구성, 경관연출 등에서 한국전통 정원의 미학이 잘 살아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서울시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민간정원으로서 의미와 희소 가치가 각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분명한 상태이므로,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면 수정, 반영하여 명승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락원이라는 이름도 관광지 개발 시점과 관련된 특정 시기의 산물임이 밝혀졌으므로 추후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토대로 한 재논의, 연구를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특정 시기의 유형적 자산만이 아니라 누적된 다양한 시간적 층위와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선말 황윤명의 정원만이 아니라 왕족의 별서, 관광지로서 성락원, 이후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춘파유고』의 시문과 『정선총쇄록』 등의 기록 등과 일치하는 곳으로 정원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검증되고 지형 및 유적 유구 등이 대체적으로 보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원문화사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600년 서울 도읍의 대표적 정원문화가 대부분 소실 및 멸실 된 상황에서 지금껏 보존되어 전해지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임시 명칭은 서울 성북동 별서로 하되 지정명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심의 시 재검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9명, 보류 1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천기 2019-05-11

11.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지정면적 정정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의 지정면적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문화재현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2007.12.17. 지정)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외
- 지정가치 :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백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유서 깊은 숲으로 남부지방의 사찰 동백나무 숲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수령이 100년 이상 된 7천여 주의 동백나무가 사찰 주변에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됨

다. 정정내용

- 추진경위
 - 사유지 경계불명확에 따른 경계측량 실시요청(***→*****)
 - 측량 결과 지정면적이 감소하여 변경신고서 제출(***→*****)
- 지정면적 정정

소재지	지번	현행 지정면적		정정사항		비 고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35-1	138,744	138,744	136,502	136,502	감 2,242m ²
	산 35-3	15,174	15,174	15,174	15,174	-
계		153,918	153,918	151,676	151,676	감 2,242m ²

- 정정사유 : 대상문화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지정 고시된 면적과 상이하여 면적 정정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접수 8명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9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69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따오기 야생 복원 - 허가내용 : 따오기 방사 - 허가개체 : 40개체 - 허가장소 :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20.5.28. ~ 2020.6.30.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남생이 유전적 특성 및 증식기술 연구 - 허가내용 : 남생이 사육, 소각 - 허가개체 : 11개체(사육 4개체, 소각 7개체) - 허가장소 :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 허가기간 : 2020.5.29. ~ 2025.5.28.	<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신청사항 - 사업명 : 장수하늘소 복원 - 신청내용 : 장수하늘소 포획 - 신청개체 : 4개체 - 신청장소 : 양양군 일원 ○ 불허사유 :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용역 과업범위에 미해당	<불허>
	4	동물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신청사항 - 사업명 : 장수하늘소 복원 - 신청내용 : 장수하늘소 포획 - 신청개체 : 4개체 - 신청장소 : 춘천시 일원 ○ 불허사유 :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용역 과업범 위에 미해당	<불허>
	5	동물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점박이물범 폐사체 매장 - 허가내용 : 점박이물범 매장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6.9.~2020.6.23.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 상 문 화 재	주 요 내 용	비 고
	6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태안군 황새의 이동경로 및 유전자 분석 시료확보 - 허가내용 : 황새 증식개체 포획 및 가락지 부착, 시료채취 - 허가개체 : 황새 4개체(태안군 번식 유조) - 허가장소 : 태안군 남면 달산리 송전탑 ○ 허가기간 : 2020.6.10. ~ 2020.7.31. 	<허가>
	7	동물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철새 이동경로 연구 - 허가내용 : 노랑부리백로 위치추적기 부착 - 허가개체 : 6개체 - 허가장소 :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구지도 ○ 허가기간 : 2020.6.15. ~ 2020.7.31. 	<허가>
	8	동물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노랑부리백로 이동경로 연구 - 허가내용 : 노랑부리백로 포획 및 가락지 부착, 채취 - 허가개체 : 60개체 이하(지역별 20개체 이하) - 허가장소 : 인천시 옹진군 황서도, 백령도, 구지도 ○ 허가기간 : 2020.6.9. ~ 2020.7.31.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비단벌레 학술연구 - 허가내용 : 비단벌레 포획 - 허가개체 : 4개체 - 허가장소 : 완도군 군외면 일원 ○ 허가기간 : 2020.6.09. ~ 2020.8.31. ○ 허가조건 : 포획이 완료된 후 사육허가 신청 	<조건부 허가>
	10	동물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비단벌레 학술연구 - 신청내용 : 비단벌레 포획 - 신청개체 : 4개체 - 허가장소 : 고성군일원 ○ 불허사유 : 과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 	<불허>
	11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황새 복원을 위한 이송 및 사육 - 허가내용 : 황새 이송 및 사육 - 허가개체 : 28개체 영구이송 - 허가장소 : 예산황새공원 ○ 허가기간 : 2020.6.17. ~ 2025.6.16 	<허가>
	1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하늘다람쥐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하늘다람쥐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멸실번호 202006000075) ○ 허가기간 : 2020.6.17. ~ 2020.7.1.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13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황새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황새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멸실번호 2020-경기-과천시-9) ○ 허가기간 : 2020.6.17. ~ 2020.7.1.	<허가>
	14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등 2종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유전자 분석 연구 목적 시료채취 및 전시용 박제제작 - 허가내용 : 올빼미, 참매 폐사체 시료채취 및 표본제작 - 허가개체 : 2개체(올빼미 22003000080, 참매 202005000018) - 허가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 허가기간 : 2020.6.17. ~ 2020.7.31.	<허가>
	15	동물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등 2종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시용 박제제작 - 허가내용 : 팔색조, 두견 폐사체 표본제작 - 허가개체 : 2개체 (팔색조 : 2020-제주-제주시-3, 두견 : 2020-제주-제주시 4) - 허가장소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허가기간 : 2020.7.1. ~ 2020.9.30.	<허가>
	16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식만사상(대저대교)간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육수생태계 조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일원 낙 동강 수계(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정치망 2개소(강서구 1개소, 사상구 1개소) 설치(길이 40m), 우기 전· 후 1회(총 2회) 조사 ○ 허가기간 : 2020.6.11.~2020.10.31.	<허가>
	17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식만사상(대저대교)간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육수생태계 조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낙동강 수계(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정치망 2개소(강서구 1개소, 사상구 1개소) 설치(길이 40m), 우기 전· 후 1회(총 2회) 조사 ○ 허가기간 : 2020.6.11.~2020.10.31.	<허가>
	18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주차장 설치 토지형질 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18-17 번지(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토지형질변경(답 → 주차장), 쇠석 포장5cm 경계석 설치, 주차장면적 300㎡ ○ 허가기간 : 2020.6.11.~2020.7.31.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19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낙동강 하굿둑 위험지역 안전 부표 설치 - 사업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낙동강하굿둑 수문 상류)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부표설치(5개소) ○ 허가기간 : 2020.7.1.~2020.8.31. 	<허가>
	20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선박접안용 계류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21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계류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1,885.37㎡(직접 475.11㎡, 간접 1,410.26㎡)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장 설치는 선박 전시 접안시설로 한정하며 선박 운항은 불가함. - 접안된 선박의 기름 유출 및 오염수 처리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1.~2021.12.16. 	<조건부 허가>
	21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불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군도 19호선)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945-2번지 일원(허용기준 3~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 2km, 폭 10.5m · 3구역 390m, 4구역 460m, 구역 외 1,150m ○ 허가조건 : 불음도 저수지 인근 지역은 저어새 휴식지(59월)이며, 4구역 주변 농경지는 먹이활동지(56월)로 동 기간에 대한 사업중지를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관할 문화재부서(문화관광과)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1.~2022.12.31. 	<조건부 허가>
	22	동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동식물관련시설(대나무 분재사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7-35번지, 산57-29번지(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686㎡, 건축면적(연면적) 198㎡, 지상1층, 최고높이 6.2m, 절토 5.72m ○ 허가기간 : 2020.6.1.~2020.10.31.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23	동 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 사업위치 : 경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일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시추조사(수상) 20공(김포시 14공, 파주시 6공), 직경 76mm, 굴착깊이 70m ○ 허가조건 : 한강하류 수변 일대는 다양한 물새 (논병아리,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등) 들의 번식시기(5~7월)로 수변인근 시추조사(NHTB-1, 9, 10, 11)시 방음판넬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 하여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 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1.~2020.8.31. 	<조건부 허가>
	24	동 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신촌동 일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시추조사(수상) 20공(김포시 14공, 파주시 6공), 직경 76mm, 굴착깊이 70m ○ 허가조건 : 한강하류 수변 일대는 다양한 물새 (논병아리,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등) 들의 번식시기(5~7월)로 수변인근 시추조사(NHTB-1, 9, 10, 11)시 방음판넬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 하여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 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1.~2020.8.31. 	<조건부 허가>
	25	동 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가금제 제방복구공사 부대시설 설치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27-4, 27-5(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도로(농지성토) 대지면적 3,067㎡, 성토면 적 2,887㎡, 성토 1.5m · 컨테이너 2동 설치, 전체면적 36㎡, 높이 2.5m ○ 허가기간 : 2020.6.12.~2021.10.31.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6	동물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683-1(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사업부지 1,626㎡, 설치면적 931㎡ ○ 허가조건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지역 주변 경사도를 고려하여 차폐나무를 식재하시기 바라며, 식재시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람.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2021.5.31. 	<조건부 허가>
	27	동물	천연기념물 제389호 영광 칠산도 팽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천연기념물 동물 위치정보 연구 - 사업위치 : 영광 칠산도 팽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내(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개체수 : 노랑부리백로(10개체), 저어새(10개체), 팽이갈매기(50개체) · 포획 후 가락지 및 위치추적기 부착, 혈액 채취 등 ○ 허가기간 : 2020.6.11.~2020.7.31. 	<허가>
	28	식물	천기 제469호 예천 금당실 송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668-2(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데크탐방로 500m, 금곡어류서식처 8,000㎡, 제방축제 및 호안 설치 1,775m, 징검다리 설치 2개소, 금당실 생태마당 조성 8.5ha 등 ○ 허가기간 : 2020.5.29. ~ 2020.9.30. 	<허가>
	29	식물	천기 제343호 통영 욱지도 메밀잣밤나무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이중섭길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욱지면 동항리 560-33(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전망데크 설치 1개소(폭 10m * 길이 10m), 이중섭 조형물 설치 1개소(폭 1.5m * 높이 1.5m), 안내판 보수 등 ○ 허가기간 : 2020.5.29. ~ 2020.12.31.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30	식물	천기 제445호 하동 송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수상레저기반시설 조성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7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장(1,111㎡) 조성 및 차폐식재 · 시 설 물 : 관리사무소 1동(21㎡), 화장실 1동(30㎡), 샤워실 1동(26㎡), 막구조물 44m, 휴게데크 111㎡ 등 · 바닥포장 : 인조화강투수블록 1,260㎡, 탄성 포장 1,111㎡ · 기 타 : 주차장 내 기존시설물 이전 및 하천 준설모래 원상복구 등 ○ 허가조건 :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 * 하동군 문화체육과-10310호(2020.5.15.) 및 10916호(2020.5.26.) ○ 허가기간 : 2020.6.1. ~ 2020.12.31. 	<조건부 허가>
	31	식물	천기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클린존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14-11(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클린존 설치 8㎡ · 규모(1동, 철골조, 최고높이 2.1m) ○ 허가기간 : 2020.6.10. ~ 2020.7.31. 	<허가>
	32	식물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불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창덕궁 향나무 시료채취 - 사업내용 : 뿌리, 잎, 줄기 직경 5cm, 길이 10cm ○ 불허사유 : 노거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불허>
	33	식물	천연기념물 제38호 구례 화엄사 울벚나무 천연기념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울벚나무, 매화 증식복원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구례 화엄사(문화재) - 사업내용 : 시료채취 · 울벚나무 종자 2,000립, 매화 종자 500립 ○ 허가조건 : 복원사업은 별도 현상변경 허가를 특한 후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6.11.~2021.7.31.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34	식물	천연기념물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곰향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허가내용 : 삽수 30개(3~5cm), 종자 100개 ○ 허가기간 : 2020.6.17.~2021.6.16.	<허가>
	35	지질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 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금호리(불동) 농로포장공사 - 사업위치 :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163-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농로포장공사 L=120m, B=3m ○ 허가조건 : 농로포장시 절토가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질(또는 화석)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20.5.29 ~ 2020.6.30.	<조건부 허가>
	36	지질	천연기념물 제391호 「웅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 행장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백령 사곶사빈 및 콩돌해빈의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용역 - 사업위치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381-19창 전면 사곶해빈 - 허가내용 : 지반조사(보링) ○ 허가조건 - 시추조사 등 지반조사 항목(기 제출한 사곶사빈 현상변경 계획서 3쪽)에 대한 조사시 조사지점을 경위도 좌표 및 TM 좌표로 명기할것 - 결과보고서에 위 사항과 측정기기명 및 실험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허가기간 : 2020.6.1.~2020.6.30.	<조건부 허가>
	37	지질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체험승마장 운영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1 - 허가내용 · 말 3필, 관광목적 운영(코스 :0.4km, 0.8km) · 운영시간 : 10:00 ~ 17:00 · 시설물 : 안전대(이동식타자), 철제장(말 고정용) ○ 허가조건 - 분노 발생 즉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허가기간 중 동 사항과 관련 하여 관계기관의 불시점검에 3회 이상 적 발시 허가 취소 - 운영일지 및 분노처리실적은 일별 기록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하며 매 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3필)은 운영시간 이외에는 지정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사육할 것 - 허가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재구역 사유토지 매입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는 경우 매입을 완료한 날을 허가 종료일로 함 - 이후 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종료 60일전에 신청할 것 <p>○ 허가기간 : 2020.6.13. ~ 2021.6.12.</p>	
	38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111 (2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3m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46㎡, 건축면적 96㎡ · 경량철골조, 지상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4.5m · 울타리 : 제주석 막쌓기 L=52.7m(H0.8m 이상) · 수목제거 : 굴나무 26주 · 수목식재 : 동백나무 등 3종 14주, 소철 등 2종 40주, 굴나무이식 20주 · 포장면적 31.25㎡ 등 <p>○ 허가기간 : 2020.5.26. ~ 2021.3.31.</p>	<허가>
	39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20년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8 외 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1-04) 낙석방지책 설치 H3.0m, L=20m · (10-07-01) 탐방로 우회 보행로드(철제데크) W1.5m, L=33m · (10-26-01) 기존 돌갈기 철거 W1.5m, L=37m, 우회로 돌갈기 W1.5m, L=40m / 난간 및 철망 설치 H4.4m, L=6.5m 낙석위험 표지판 설치(2개소) · (11-18-01) 낙석방지웬스(W2m*H1.2m) L=44m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돌계단 W1.5m, L=24.6m, 우회탐방로 사면정리 W1.5m, L=60m</p> <p>○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하되, (10-02-02)구간은 제외하시기 바람</p> <p>○ 허가기간 : 2020.5.27.~2020.12.31.</p>	
	40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p> <p>-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문화재구역)</p> <p>- 사업내용</p> <p>· 낙석방지책 L=30m, H3m), L=33m(H5m)</p> <p>○ 허가조건 : 낙석방지책 색상은 주변 암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p> <p>○ 허가기간 : 2020.5.27.~2020.12.31.</p>	<허가>
	41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2020년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p> <p>-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문화재구역)</p> <p>- 사업내용: 낙석방지웬스(W2000*H1.2m) L=40m</p> <p>○ 허가기간 : 2020.5.15.~2020.12.31.</p>	<허가>
	42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한라산 구상나무 종 복원연구</p> <p>-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1100로 2070-510(만세동 일원)(문화재구역)</p> <p>- 사업내용 : 구상나무 1,000주</p> <p>· 6년생 실생묘(W0.1*H0.12), 한라산 자생 주상 나무 파종 증식 묘목</p> <p>· 식재용기(0.33*0.33*0.13) 80개(친환경소재 특수제작, 야자섬유 100%)</p> <p>· 야자섬유 내 구상나무 묘목을 배치하고 식재 터파기 없이 용기 채 현장배치</p> <p>○ 허가기간 : 2020.6.1.~2020.12.31.</p>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 상 문 화 재	주 요 내 용	비 고
	43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독도 입도 영상시스템 구축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이사부길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도헬기장 : 고정카메라 1식(폴 H1.0m) · 서도주민숙소 : PTZ카메라1식(폴H1.7m), 태양광전지판(3000*1700) 2개소 등 ○ 허가조건 : 독도 서도 정상부 카메라 설치사업 제외 ○ 허가기간 : 2020.6.11.~2021.6.10. 	<조건부 허가>
	44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안영복길 3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장 하부 : DU장비 1식(1500*1000, H1.5m) · 철탑 : RU장비 1식(1500*1000, H1.5m), 안테나(300*1500) 3기 등 ○ 허가기간 : 2020.6.11.~2020.12.31. 	<허가>
	45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하례지구 상수관로 시설공사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신98번지 등(문화재구역, 2~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내 상수관로 L=98m(관매달기 L=70m, 하천횡단 L=28m) · 2~4구역 상수관로 L=2,668.5m(B1.3~1.5m, 깊이 1.45m) 등 ○ 허가기간 : 2020.6.11.~2021.6.10.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 상 문 화 재	주 요 내 용	비 고
	46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하례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752-23, 1752-7(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2m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55m², 건축(연)면적 113.43m²/103.87m² · 최고높이 4.6m(지상1층, 평지붕) 등 ○ 허가기간 : 2020.6.11. ~ 2021.7.31. 	<허가>
	47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20년 봉정암 공중화장실 주변정비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진입부 캐노피설치(W=3.8m, L=6.06m, H2.835m) /- 지붕 동판, 기둥 아연도각관 · 정화조, 화장실 관리용 목재계단 설치(W=1.0m, L=13.92m) · 보일러실 관리용 목재계단 설치(W=0.6m, L=7.28m) ○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 허가기간 : 2020.6.12. ~ 2021.6.11. 	<조건부 허가>
	48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설악산 탐방로 안전성강화 및 훼손지 식생복원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34 등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공 : 콘크리트포장 7,519m²(기존 노후 포장 구간), 암깨기 150m²(돌갈기 포장구간해체) · 토공 : 전기배관토공 2,014m²(굴착 후 채성토) · 포장공 : 투수골재포장 4,491m², 마사토포장 119m²,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돌갈기 150㎡, 흙콘크리트포장 863㎡</p> <p>· 전기공 : 전선관 매설 2,022m, 맨홀 16개소 설치</p> <p>○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p> <p>○ 허가기간 : 2020.6.16. ~ 2020.12.31.</p>	
	49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2020년 연안정비사업(수마포구지구)</p> <p>-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80(문화재구역)</p> <p>-사업내용 : 호안정비(피복석설치) L=109m</p> <p>○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p> <p>○ 허가기간 : 2020.6.15. ~ 2020.12.31.</p>	<조건부 허가>
	50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국가 환경방사선감시기 이전</p> <p>-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3-9(문화재구역)</p> <p>-사업내용</p> <p>· 사업부지 4㎡, 시설면적 0.05㎡, 연면적 0.2㎡</p> <p>· 최고높이 1.2m</p> <p>* (철거) 가파리 701(마라리마을회관)→ (이전설치) 가파리 583-9(마라출장소)</p> <p>○ 허가기간 : 2020.6.15. ~ 2020.12.31.</p>	<허가>
	51	천연 보호 구역	<p>천연기념물 제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사업명 : 군사시설 정비(헬리패드 보수) 사업</p> <p>-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신1-2 (문화재구역)</p> <p>-사업내용</p> <p>· 기존 헬기장 2개소 제거 : 조약돌 A=51㎡</p> <p>· 헬리패드 2개소 설치 : 콘크리트 포설 15*15m H0.5m</p> <p>· 이착륙 유도등 8개, 풍향지시기 1개, 진입로 노상정비 L=74m 등</p> <p>○ 허가기간 : 2020.6.17. ~ 2020.12.31.</p>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 상 문 화 재	주 요 내 용	비 고
	52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쉘스설치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821 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주변 쉘스설치 4m*4m, H1.95m 등 ○ 허가기간 : 2020.6.17.~2021.6.16. 	<허가>
	53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111 (2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3m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42m², 건축면적 97.5m² · 경량철골조, 지상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4.24m ○ 허가조건 : 변경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 허가기간 : 2020.6.17.~2021.3.31. 	<조건부 허가>
	54	천 연 보 호 구 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111 (2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3m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394m², 건축면적 91m² · 경량철골조, 지상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4.24m ○ 허가조건 : 변경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 허가기간 : 2020.6.17.~2021.12.31.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5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2020년 설악산국립공원 오세암 진입로 정비사업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4 외1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기존목재데크 2경간 철거 후 신규 목재데크와 연결 W1.2m, L=3m · 신규목재데크 설치 W1.5, L=26m 등 ○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 허가기간 : 2020.6.17. ~ 2021.6.16. 	<조건부 허가>
	56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LGU+ 5G중계기 설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안영북길 3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헬기장 하부 : 기존 옥외함체 내 5G 기지국(DU) 추가설치 · 철탑 : 중계기 AAU2개소 설치 ○ 허가기간 : 2020.6.16. ~ 2020.12.31. 	<허가>
	57	명승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고 잦은 곳)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06번지(7구역) - 사업내용 : 보도정비 및 도로개선 · 절토 19m³, 성토 1,000m³, 보도포장 1,565m² ○ 허가기간 : 2020.6.3. ~ 2020.12.31. 	<허가>
	58	명승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삼층석탑 주변정비(삼성각 이축) -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삼성각(27.86m²) 이축, 배수로정비 ○ 허가기간 : 2020.6.12. ~ 2020.12.31.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59	명승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화엄사 보적암 공양간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연기암길 232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공양간 1동 신축(74.4m ² , 맞배지붕) ○ 허가기간 : 2020.6.12. ~ 2020.12.31.	<허가>
	60	명승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24.08m ²) ○ 허가기간 : 2020.6.12. ~ 2020.8.31.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매사냥 전승활동 - 허가내용 : 매사냥 전승활동을 위한 사육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당초 : 2015.6.25. ~ 2020.6.24. - 변경 : 2020.6.25. ~ 2025.6.24.	<허가 사항 변경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 신 청 인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시목적 미호종개 사육 - 허가내용 : 미호종개 사육 - 허가개체 : 20개체 - 허가장소 : 인천학생과학관 꿈돌이관 민물수족관 ○ 허가기간 - 당초 : 2016.6.20. ~ 2021.6.19. - 변경 : 2020.6.12. ~ 2025.6.11.	<허가 사항 변경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시목적 어름치 사육 - 허가내용 : 어름치 사육 - 허가개체 : 20개체 - 허가장소 : 인천학생과학관 꿈돌이관 민물수족관 ○ 허가기간 - 당초 : 2016.6.20. ~ 2021.6.19. - 변경 : 2020.6.12. ~ 2025.6.11.	<허가 사항 변경허가>
	4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34	<허가 사항 변경>

구분	연 번	유 형	대 상 문 화 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철새도래지	<p>번지 외 10필지(문화재구역, 1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관규모는 2.2m(관경)×1,416m (길이)로 육상부 608m(허용기준 1구역), 하저터널808m(지정구역) · 육상부는 개착식공법(터파기 폭 4m, 깊이 4~10m)으로 설치하고 낙동강 구간은 하저터널(폭 3.5m, 깊이 42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철새도래기간 11월~익년3월 피하여 실시하고 영향저감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3월) 피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영향저감방안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허가기간 중 1회('20.11월~'21.3월)에 한하여 사업추진(무소음, 무진동 쉼트TBM굴착)을 허가함. · 철새 도래기간('20.11월~'21.3월) 공사시 공사시점 및 종점, 지하구간의 상부인 수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월 1회)를 실시하여 굴착 종료시점('21.4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허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2018.5.1.~2021.4.30. - 변경 : 2018.5.1.~2022.10.31. 	조건부 허가>
	5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조사 - 사업위치 : 낙동강하구, 을숙도생태공원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하구 습지생태 연구 및 기초조사(장소) 을숙도 생태복원지, 연안사주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 일원(조사방법) 동·식물 채집, 분류, 조사, 표본제작(개체 종류별 20점 이내), 방사 등 -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동물·식물·광물 포획·채취·반출 포함)(장소) 교육실, 연안사주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 일원(내용) 하구답사, 갯벌체험, 식물관찰, 곤충관찰, 철새관찰, 전문교육 등(조사방법) 동·식물 채취(반출) - 개체 종류별 50개 이내(프로그램 1회당)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이에 따른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 	<허가 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 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p>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채집 시 범정보호종 및 희귀종, 국제보호종은 제한하여 주시고, 천연기념물 동물 종은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시기 바람. <p>○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2007.9.20.~2020.6.30. - 변경 : 2007.9.20.~2023.6.30. 	
	6	식물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울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방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울지리 산19-1일원(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사방댐 1개소(30m), 기슭막이(22m), 낮은 바닥막이 1개소, 슬라브교(b=3m, l=7.5m) 등 · 변경 : 동일 사업에서 우안으로 1m 계류선형 조정, 슬라브교(b=4m, l=7.5m) 폭 변경 <p>○ 허가기간 : 2020.2.27.~2020.6.30.</p>	<허가 사항 변경허가>
	7	식물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탐방로 확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범수면 대송리 883-1 일원(허용기준 1구역,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경화마사토포장 3,927㎡ (L=880m, B=2~5m), 아치목교 1개소(L=10.5m, B=2.0m), 박터널 설치 (L=100m, B=4m), 진입데크 50경간(L=75m, B=2m) · 변경 : 경화마사토포장 2,397㎡(L=665m, B=3m), 황토콘크리트포장 973㎡(L=255m, B=3~4m), 아치석교(목재데크외부마감) 1개소(L=7.2m, B=4.5m), 박터널 설치 (L=100m, B=4m, 위치조정), 진입데크 50경간(L=75m, B=2m), 보행로 확장(L=214m, B=2m), 차폐식재 33주(능수버들, 회화나무 등) <p>○ 허가조건 : 변경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아치석교와 연결되는 탐방로(665m)는 당초 허가서(허가번호: 제2018-1399호)대로 경화마사토포장으로 시행 할 것</p> <p>○ 허가기간 : 2018.11.27.~2020.12.31.</p>	<허가 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구분	연 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독도 입도 영상시스템 구축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이사부길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도헬기장 : 고정카메라 1식(폴 H1.0m) · 서도주민숙소 : PTZ카메라 및 고정식카메라 1식 (폴H1.7m), 태양광전지판(3000*1700) 2개소 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도헬기장 : 변경없음 · 서도주민숙소 : 폴에 고정식카메라(추가) ○ 허가기간 : 2020.6.11. ~ 2021.6.10.(변경없음) 	<허가 사항 변경허가>
	9	명승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1 (문화재 2, 3구역) - 변경사항 : 오수관로 위치변경, 지붕처마 추가 ○ 허가기간 : 2020.6.3. ~ 2020.7.31. 	<허가 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접수 8명